제3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1절 마약류의 개요

제2절 2013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제5절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제6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범죄동향 및 분석

검찰
PROSECUTION SERVICE

제1절 마약류의 개요

1.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2. 범죄유형

▶ 마약류와 그 원료의 밀조, 밀매 및 밀수행위
▶ 마약류의 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3. 기타 특이사항

▶ 양귀비 개화기 특별단속 실시(2013. 4. 중순 ~ 6. 하순)
▶ 대마 수확기 특별단속 실시(2013. 6. 중순 ~ 7. 중순)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2013 4. 1. ~ 6. 30.)

제2절 2013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1. 마약류별 내역

표 3-1 마약류별 현황

구분 / 마약류	건수	인원 (명)		
		합계(점유율)	구속	불구속
합계	8,454	9,764(100%)	2,062	7,702
마약	629	685(7.0%)	28	657
향정	6,913	7,902(80.9%)	1,878	6,024
대마	912	1,177(12.1%)	156	1,021

▶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9,764명으로 전년도 9,255명 대비 5.5% 증가

▶ 마약사범은 685명으로 전년도 582명 대비 17.7% 증가

▶ 향정사범은 7,902명으로 전년도 7,631명 대비 3.6% 증가

▶ 대마사범은 1,177명으로 전년도 1,042명 대비 13.0% 증가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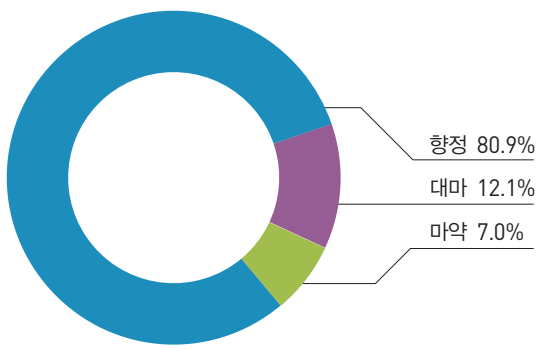

2. 유형별 내역

표 3-2 마약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마약류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
마약	0	12	38	447	109	18	61	685
향정	14	363	2,122	0	4,577	281	545	7,902
대마	0	72	180	60	741	84	40	1,177

▶ 투약사범은 5,427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5.6%(전년도 54.9%)를 차지

▶ 밀조 · 밀수 · 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2,801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28.7%(전년도 30.2%)를 차지

▶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5.5% 증가하고, 공급사범은 증감없음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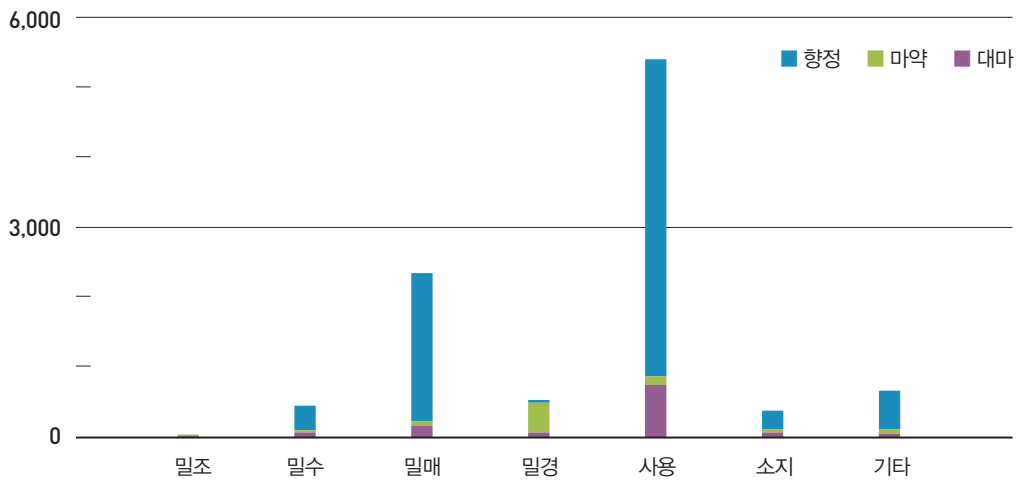

3. 청별 내역

표 3-3 청별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 청별	2012		2013		증감률 (%)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 계	9,255	100.0	9,764	100.0	5.5
서울중앙지검	1,201	13.0	1,043	10.7	-13.2
서울동부지검	231	2.5	218	2.2	-5.6
서울남부지검	316	3.4	301	3.1	-4.7
서울북부지검	264	2.9	325	3.3	23.1
서울서부지검	264	2.9	295	3.0	11.7
의정부지검	462	5.0	482	4.9	4.3
인천지검	1,102	11.9	1,116	11.4	1.3
수원지검	1,486	16.1	1,737	17.8	16.9
춘천지검	251	2.7	293	3.0	16.7
대전지검	328	3.5	462	4.7	40.9
청주지검	261	2.8	187	1.9	-28.4
대구지검	649	7.0	779	8.0	20.0
부산지검	1,098	11.9	1,123	11.5	2.3
울산지검	166	1.8	152	1.6	-8.4
창원지검	683	7.4	700	7.2	2.5
광주지검	266	2.9	309	3.2	16.2
전주지검	192	2.1	201	2.1	4.7
제주지검	35	0.4	41	0.4	17.1

※ 지검 실적에 관내 지청분 및 경찰·세관 송치분 포함

▶ 청별 단속점유율은 재경지검(서울중앙, 동, 서, 남, 북부지검 포함) 22.3%, 수원지검 17.8%, 부산지검 11.9%, 인천지검 11.4%, 대구지검 8.0% 순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6.4%(전년도 57.5%)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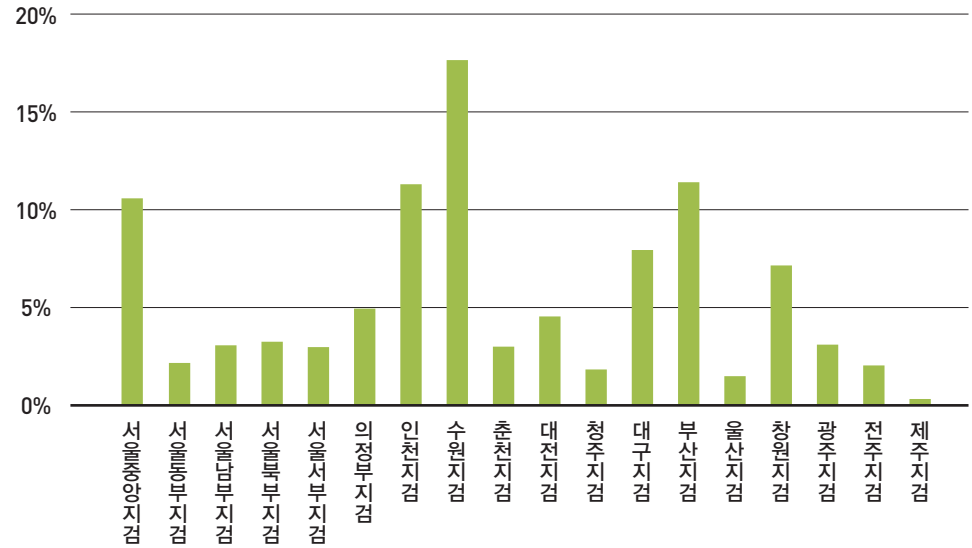

4. 마약류 · 월별 내역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 월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 구성비	
합계	685	7,902	1,177	9,764	100
1월	17	558	67	642	6.6
2월	12	489	45	546	5.6
3월	8	690	72	770	7.9
4월	9	690	107	806	8.3
5월	33	762	129	924	9.5
6월	158	674	81	913	9.4
7월	229	963	172	1,364	14.0
8월	147	693	99	939	9.6
9월	14	482	78	574	5.9
10월	11	669	105	785	8.0
11월	23	574	105	702	7.2
12월	24	658	117	799	8.2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7월(14.0%), 8월(9.6%)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4월 중순경부터 7월 중순경 사이 시행한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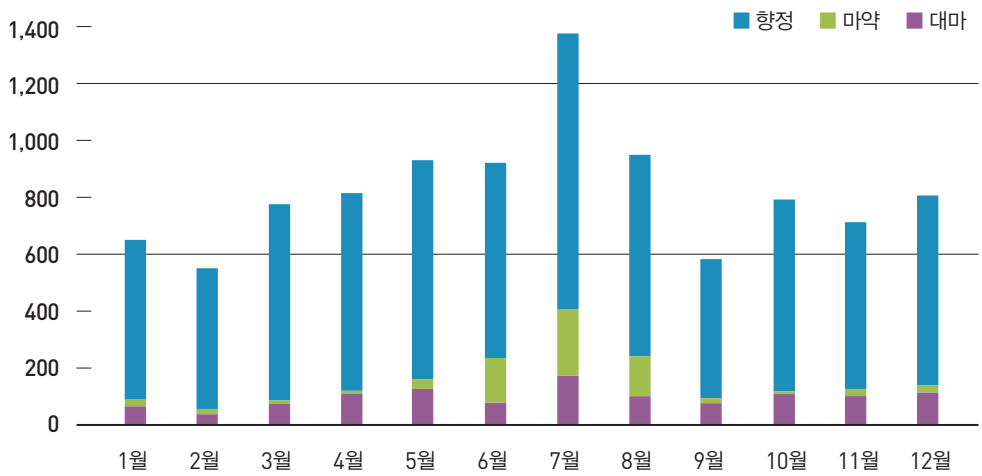

5. 기관별 단속 내역

표 3-5 기관별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 기관별	검찰	경찰	기타	합계
전체 마약류사범	4,280 (43.8)	5,484 (56.2)	0 (0.0)	9,764 (100)
공급관련 마약류사범	1,463 (52.2)	1,338 (48.8)	0 (0.0)	2,801 (100)

▶ 기관별 단속점유율은 검찰 43.8%, 경찰 56.2% 차지

▶ 검찰은 전년대비 2.8%(전년도 4,163명) 증가하고 경찰은 7.7%(전년도 5,092명) 증가

▶ 공급관련 마약류사범에서는 검찰 0.1%(전년도 1,465명) 감소, 경찰 0.1%(전년도 1,336명) 증가

6. 처리내역

표 3-6 마약류별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 마약류	처리계[1]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소년부이송	타관이송	기타	
합계	10,371 (100)	4,286 (41.3)	335 (3.2)	1,495 (14.4)	914 (8.8)	945 (9.1)	3 (0.0)	1,723 (16.6)	224 (2.2)	446 (4.3)
마약	669 (100)	36 (5.4)	70 (10.5)	457 (68.3)	18 (2.7)	36 (5.4)	0 (0.0)	19 (2.8)	19 (2.8)	14 (2.1)
향정	8,495 (100)	3,745 (44.1)	210 (2.5)	857 (10.1)	812 (9.6)	807 (9.5)	2 (0.0)	1,518 (17.9)	172 (2.0)	372 (4.4)
대마	1,207 (100)	505 (41.8)	55 (4.6)	181 (15.0)	84 (7.0)	102 (8.5)	1 (0.1)	186 (15.4)	33 (2.7)	60 (5.0)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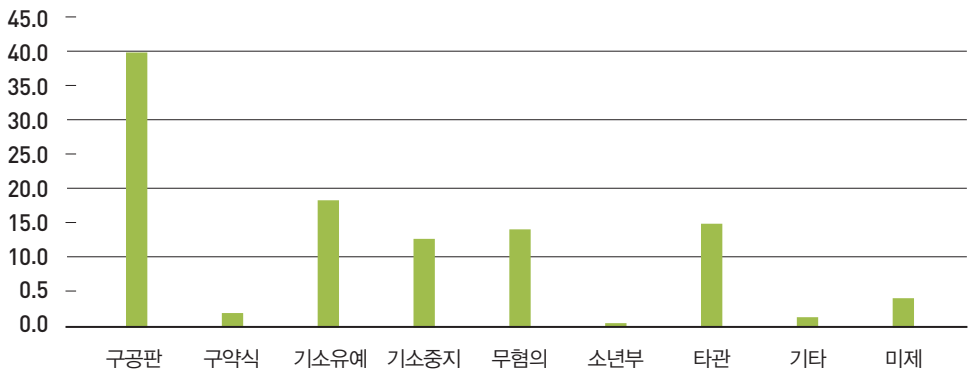

▶ 전체 마약류사범의 기소유예율은 14.4%(일반형사사범 14.2%)로 전년대비 2.0% 증가하고, 구약식률은 3.2%(일반형사사범 30.5%)로 전년대비 0.6% 증가, 구공판율은 41.3%(일반형사사범 7.6%)로 전년대비 2.2% 감소

1] 처리계는 구수를 포함한 수치임

▶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 44.1%(전년도 46.2%), 대마사범 41.8%(전년도 43.9%), 마약사범 5.4%(전년도 6.1%)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구약식률은 마약사범 10.5%(전년도 9.3%), 대마사범 4.6%(전년도 5.2%), 향정사범 2.5%(전년도 1.8%)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기소유예율은 마약사범 68.3%(전년도 71.0%), 대마사범 15.0%(전년도 15.9%), 향정사범 10.1%(전년도 7.7%) 순으로 나타남

7. 주요 마약류 압수물 내역

표 3-7 주요 마약류별 압수물 현황

구분 / 마약류		2012	2013	증감률
합계		48,201	66,200	37.3
마약	헤로인(g)	4	0	–
	생아편(g)	0	0	–
	코카인(g)	64	1,215	1,798.4
향정	메트암페타민(g)	20,716	37,689	81.9
	MDMA(g)	774	407	–47.4
	YABA(g)	133	1,319	891.7
	JWH 및 유사체(g)	4,455	1,107	–75.1
대마	대마초(g)	21,722	24,396	12.3
	해쉬쉬(g)	334	66	–80.2

▶ 2013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총 66.2kg으로 전년도 48.2kg 대비 37.3% 증가

▶ 메트암페타민은 37.7kg으로 전년 대비 81.9% 증가, 해쉬쉬는 66g으로 전년 대비 80.2% 감소, 대마초는 24.4kg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 정제형 마약류인 MDMA는 774g으로 전년 대비 47.4% 감소, YABA는 133g으로 전년 대비 891.7% 증가, 생아편은 압수되지 않았으며, 코카인은 1,215g으로 전년 대비 1,798.4% 증가

▶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신종합성마약인 JWH-018 및 유사체가 1,107g으로 전년도 4,455g 대비 75.1% 감소하였으며, 프로포폴,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펜터민, 케타민, 페노바르비탈, 크라톰, 싸이로씨빈, 살비아 디비노럼, 마진돌, 바르비탈, 디메칠트립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가 압수되어 점차 오남용 마약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 마약류사범 추세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 명)

마약류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1,875(20.0)	9,732(-18.0)	9,174(-5.7)	9,255(0.9)	9,764(5.5)
마약	2,198(57.4)	1,124(-48.9)	759(-32.5)	582(-23.3)	685(17.7)
향정	7,965(6.8)	6,771(-15.0)	7,226(6.7)	7,631(5.6)	7,902(3.6)
대마	1,712(63.8)	1,837(7.3)	1,189(-35.3)	1,042(-12.4)	1,177(13.0)

※ ( )는 증감률

▶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 실시된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단속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도부터 10,000명 선 아래로 유지되고 있음

▶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9년 67.1%, 2010년 69.6%, 2011년 78.7%, 2012년 82.5%, 2013년 80.9%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

▶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 대마사범은 2006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증가했으나 2012년도까지 소폭 감소, 2013년도 다소 증가했으며, 마약사범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0년도부터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음

• 한편, 향정사범은 1995년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도 이후에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8,0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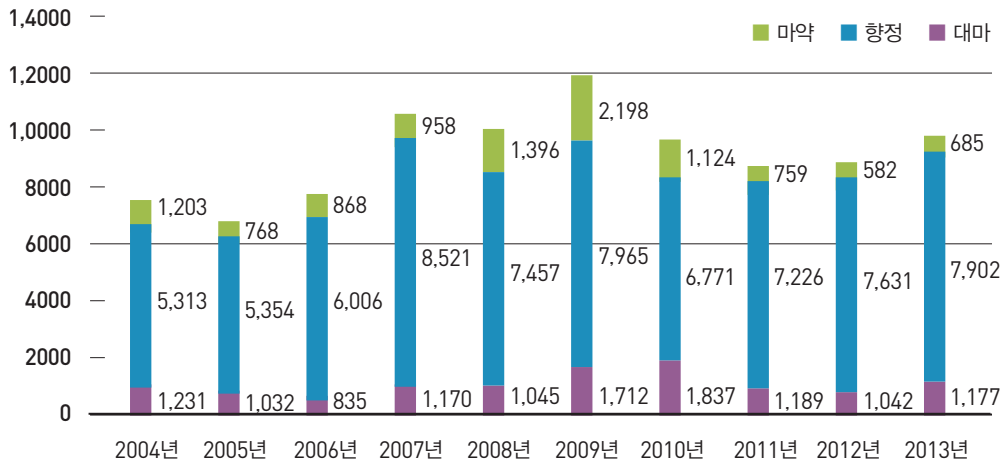

표 3-9 행위유형별 분석 (단위 :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
마약	0	12	38	447	109	18	61	685
향정	14	363	2,122	0	4,577	281	545	7,902
대마	0	72	180	60	741	84	40	1,177

▶ 전체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55.6%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24.0%), 밀경(5.2%), 밀수(4.6%), 소지(3.9%)사범 순이며, 이 중 밀수, 투약사범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밀매사범은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투약사범이 각 62.9%, 5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5.3%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임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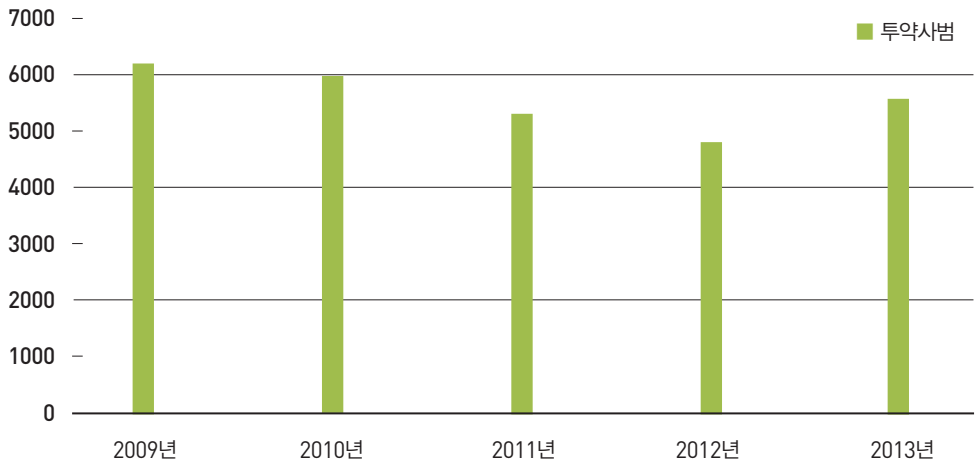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

구분 / 마약류	품명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약	양귀비	주	113,422	38,554	37,443	22,753	25,369
	생아편	g	166	50	0	0	0
	헤로인	g	1,914	81	0	4	0
	코카인	g	298	0	2,153	64	1,215
향정	메트암페타민	g	15,189	11,888	23,466	20,716	37,689
	MDMA	g	295	160	185	774	407
	야바(YABA)	g	0.3	1.7	1.7	133	1,319
	엘에스디(LSD)	g	0	0	0	11	0
	JWH-018 및 유사체	g	63	194	1,183	4,454	1,107
	프로포폴	앰플(50ml)	0	0	2,004	20,202	159
	기타 향정약품[2]	g	4,449	4,789	3,840	9,264	10,172
대마	대마	주	12,690	3,244	70,916	5,195	8,072
	대마초	g	122,539	44,484	83,559	21,722	24,396
	대마종자	g	218,156	37,048	28,229	27,871	6,215
	해쉬쉬	g	517	38	60	334	66
기타	마약류 제조기구	점	0	13	0	0	46
	마약류 제조약품	종	0	16	0	0	21

2] 로라제팜, 디아제팜 펜디메트라진,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펜터민, 케타민, 페노바르비탈, 암페타민, 크라톰, 사일로시빈, 살비아디비노럼, 마진돌, 바르비탈, 리저직산아미드, 알프라졸람, 에티졸람, 졸피뎀, GHB, 디메칠트립다민 등

3. 마약류 및 원료물질[3] 압수 현황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단위 : g)

구분 / 연도별	메트암페타민		염산(슈도)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09	15,189	0	0
2010	11,888	0	0
2011	23,466	0	0
2012	20,716	0	9,943
2013	37,689	0	762.6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구분 / 연도별	건수	헤로인 (단위 : g)	건수	무수초산 (단위 : ton)
2009	7	1,914.4	2	13.8
2010	3	81	1	0.42[4]
2011	0	0	0	0
2012	2	4	0	0
2013	0	0	0	0

3]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정한 30종(**1군 23종:**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로락톤, 1,4-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나이드, 밴즈알데히드, 메칠아민, 에칠아민, **2군 7종:** 안스라닐릭산, 에칠에텔, 피페리딘, 염산(염류제외), 메칠에칠케톤, 황산(염류제외), 톨루엔)의 물질과 그 염류

4]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조하여 U.A.E Jabel Ali 항에서 압수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 g)

구분 / 연도별	건수	제조량	
		완제품	반제품
2009	0	0	0
2010	2	2,003	0
2011	0	0	0
2012	3	4	0
2013	5	2,034	0

▶ 메트암페타민 제조사범이 2000년도 2건 5명, 2001년도 1건 4명이 적발된 이후 2002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가 2003년도 들어 밀조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제조사건 1건 2명 있었고, 2004년과 2005년 역시 적발된 사례가 없다가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감기약과 살 빼는 약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음

▶ 2006년도 1건 4명, 2007년도 1건 2명은 모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트암페타민의 제조 원료인 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을 국제우편물로 들여오거나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후 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내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여 적발됨

▶ 2010년도는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 유통이 가능한 벤질시아나이드를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1건 1명, 외국인 선원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1건 1명, 화학과 교수가 원료물질 소이움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을 제조한 1건 1명이 적발됨

▶ 2012년도는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1건 2명, 회사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과 원료물질인 GBL을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을

제조한 1건 1명, 학원강사가 원료물질인 감마브티로락톤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GHB를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적발됨

▶ 2013년도는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검색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건 2명,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명의로 마약류 원료물질인 GBL(r-butyrolactone)를 주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GHB(r-Hydrxide Butyolactone)를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건 1명,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일반인이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불상량 메트암페타민 황산염 제조 1건 2명, 호주 국적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가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 약 2㎏ 제조한 사건 1건 5명, 약 4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가정집에서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 약 34g 제조한 사건 1건 2명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이후 국내 밀조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 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서 원료물질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최근 국내외 인터넷 상에 마약류 제조법이 불법으로 유포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터넷 상시모니터링 및 관련 고용량 감기약에 대한 판매 제한 실시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함

4. 메트암페타민 밀거래가격

표 3-14 메트암페타민 밀거래가격 (단위 : 만원)

구분 / 지역별	1g당 가격						1회 투약분 (0.03g)	
	도매		중간도매		소매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서울	25	20	50	40	100	80	10	10
인천	15	15	30	40	70	100	10	10
대구	20	20	40	40	100	90	10	10
부산	15	10	35	25	85	70	10	10
광주	–	–	50	50	70	75	10	10
5대도시 평균	19	16	41	39	85	83	10	10

▶ 메트암페타민 1g당 5대 도시 평균 도매가격은 16만원, 중간도매가격은 39만원, 소매가격은 83만원으로 모두 소폭 감소하였고,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8 거래유형별 가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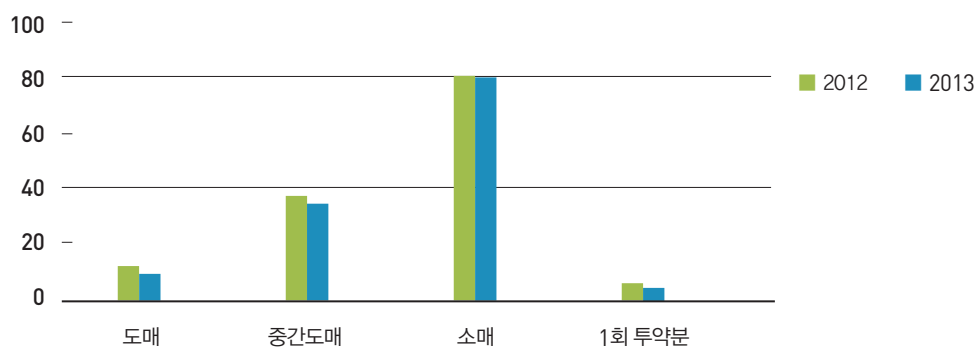

5.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15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구분 / 마약류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합계(g)	95	34,278 (34,195)	116	12,729 (8,723)	84	22,949 (22,347)	99	34,885 (27,128)	158	40,917 (40,815)
코카인(g)	2	58 (58)	0	0 (0)	1	2,100 (2,100)	1	3 (3)	4	1,202 (1,202)
헤로인(g)	5	1,909 (1,897)	2	31 (31)	0	0 (0)	1	7 (3)	0	0 (0)
생아편(g)	2	24 (24)	1	2 (2)	0	0 (0)	0	0 (0)	0	0 (0)
메트암페타민(g)	55	10,223 (10,205)	73	8,642 (8,201)	50	19,015 (18,416)	50	23,417 (19,033)	64	29,155 (29,076)
MDMA(g)	3	103 (103)	5	179 (14)	1	3 (0.3)	8	1,342 (774)	9	47 (47)
엘에스디(g)	0	0 (0)	0	0 (0)	0	0 (0)	1	11 (11)	0	0 (0)
야바(g)	1	53 (0)	1	1.6 (1.6)	1	0 (0)	1	133 (133)	3	1,267 (1,267)
대마초(g)	19	21,792 (21,792)	22	276 (276)	12	619 (618)	12	2,725 (2,725)	61	7,370 (7,347)
해쉬쉬(g)	5	53 (53)	3	3,404 (4)	2	28 (28)	2	21 (21)	7	53 (53)
JWH-018 및 유사체(g)	3	63 (63)	9	194 (194)	17	387 (367)	23	7,226 (4,455)	10	1,823 (1,823)

※ ( )는 압수량

▶ 2013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40.9kg(158건)으로 2012년도 34.9kg(99건) 대비 17.2% 증가

▶ 밀반입된 외국산 마약류는 필로폰, 대마초, 야바, 코카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2013년에도 신종합성마약인 JWH-018 및 유사체의 밀반입량이 전년도에 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외 프로포폴, 크라톰, 케타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졸피뎀, 디메스케치논, 리저직산아미드 등 신종마약으로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음

표 3-16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 g)

구분 / 마약류별	국가별	2011			2012			2013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트암페타민[5]	중국	38	5,843	5,254	70	11,880	9,836	46	13,719	13,640
	필리핀	2	2,082	2,082	4	1,427	1,427	5	15	15
	체코							1	1	1
	태국	0	0	0	1	4	4	1	28	28
	미국	2	18	8	5	212	212	6	1,855	1,855
	홍콩	0	1	1	0	0	0	4	18	18
	남아프리카공화국	2	3,571	3,571	0	0	0	0	0	0
	대만	1	0	0	2	5,000	2,660	0	0	0
	마카오	0	0	0	0	0	0	1	6,240	6,240
	베트남	2	18	18	8	15	14	0	0	0
	캐나다	1	3,245	3,245	0	0	0	0	0	0
	아랍에미리트	0	0	0	0	0	0	0	0	0
	말리	2	4,238	4,238	0	0	0	1	4,092	4,092
	캄보디아	0	0	0	1	616	616	0	0	0
	피지	0	0	0	1	2,491	2,491	0	0	0
	케냐	0	0	0	1	1,760	1,760	1	3,186	3,186
	인도네시아	0	0	0	1	12	12	0	0	0
	소계	50	19,016	18,417	91	19,154	14,769	64	29,155	29,076

5] 2013도에 압수된 메트페타민 총 37.7kg은 거의 외국산으로 추정되나 중간 밀매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적불명으로 분류되어 외국산 압수량에서 제외

구분 / 마약류별	국가별	2011			2012			2013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코카인	미국	0	0	0	2	3	3	3	1,192	1,192
	네덜란드	0	0	0	0	0	0	1	10	10
	파나마	1	2,100	2,100	0	0	0	0	0	0
	소계	1	2,100	2,100	2	3	3	4	1,202	1,202
헤로인	캄보디아	0	0	0	0	0	0	0	0	0
	베트남	0	0	0	1	7	3	0	0	0
	인도	0	0	0	0	0	0	0	0	0
	키르기스스탄	0	0	0	0	0	0	0	0	0
	미국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1	7	3	0	0	0
대마초	멕시코	0	0	0	1	18	18	0	0	0
	미국	4	379	378	21	2,630	2,630	22	1,548	1,544
	캐나다	1	98	98	1	19	19	9	859	859
	독일	0	0	0	0	0	0	8	39	39
	네덜란드	0	0	0	1	5	5	6	857	857
	태국	0	0	0	1	40	40	3	68	50
	호주	0	0	0	2	5	5	0	0	0
	아일랜드	0	0	0	1	4	4	0	0	0
	필리핀	0	0	0	0	0	0	1	6	6
	나이지리아	0	0	0	0	0	0	1	2,954	2,954
	영국	3	6	6	0	0	0	6	21	21
	프랑스	0	0	0	0	0	0	1	10	10
	뉴질랜드	1	41	41	0	0	0	0	0	0
	러시아	0	0	0	0	0	0	1	1,000	999
	중국	2	92	92	0	0	0	0	0	0
	스페인	1	2	2	0	0	0	0	0	0
	소계	12	618	617	28	2,721	2,721	61	7,370	7,347

구분 / 마약류별	국가별	2011			2012			2013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크라톰	미국	1	16	16	1	36	36	2	301	301
	영국	0	0	0	0	0	0	2	6	6
	캐나다	0	0	0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1	3	3	1	8	8
	소계	1	16	16	2	39	39	5	315	315
해쉬쉬	미국	0	0	0	0	0	0	4	18	18
	아일랜드	0	0	0	0	0	0	0	0	0
	러시아	0	0	0	0	0	0	1	21	21
	영국	0	0	0	0	0	0	0	0	0
	프랑스	0	0	0	0	0	0	0	0	0
	캐나다	1	27	27	0	0	0	0	0	0
	독일	0	0	0	0	0	0	2	14	14
	네덜란드	0	0	0	1	5	5	0	0	0
	스페인	0	0	0	1	17	17	0	0	0
	베트남	1	0.5	0.5	0	0	0	0	0	0
	소계	2	27.5	27.5	2	22	22	7	53	53
MDMA(g)	캐나다	0	0	0	0	0	0	0	0	0
	미국	1	3	0.3	2	63	63	4	22	22
	태국	0	0	0	0	0	0	0	0	0
	독일	0	0	0	0	0	0	2	20	20
	베트남	0	0	0	0	0	0	0	0	0
	중국	0	0	0	4	1,268	700	0	0	0
	일본	0	0	0	0	0	0	1	2	2
	네덜란드	0	0	0	0	0	0	2	3	3
	아일랜드	0	0	0	1	1	1	0	0	0
	영국	0	0	0	1	10	10	0	0	0
	소계	1	3	0.3	8	4,067	774	9	47	47

구분 / 마약류별	국가별	2011			2012			2013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케타민	중국	0	0	0	1	5	5	0	0	0
	미국	0	0	0	0	0	0	1	5	5
	대만	0	0	0	1	1	1	0	0	0
	캐나다	1	2.8	2.8	0	0	0	0	0	0
	소계	1	2.8	2.8	2	6	6	1	5	5
JWH-018(g)	영국	1	12	12	1	3	3	3	77	77
	네덜란드	0	0	0	0	0	0	3	47	47
	미국	6	146	137	12	6,355	3,587	2	1,363	1,363
	중국	0	0	0	0	0	0	0	0	0
	뉴질랜드	4	76	65	1	6	6	0	0	0
	헝가리	2	68	68	3	807	804	0	0	0
	대만	1	65	65	0	0	0	0	0	0
	호주	1	10	10	0	0	0	0	0	0
	일본	1	10	10	0	0	0	1	72	72
	베트남	0	0	0	1	0.1	0.1	0	0	0
	스페인	0	0	0	3	52	52	1	264	264
	말레이시아	0	0	0	1	3	3	0	0	0
	소계	16	387	367	22	7,226.1	4,455.1	10	1,823	1,823
야바(g)	태국	0	0	0	0	0	0	3	1,267	1,267
	중국	0	0	0	1	0.6	0.6	0	0	0
	라오스	0	0	0	1	132	132	0	0	0
	소계	1	16	16	1	36	36	3	1,267	1,267
메틸 페니데이트(g)	파키스탄	0	0	0	0	0	0	1	90	90
	필리핀	0	0	0	0	0	0	1	32.7	32.7
	미국	0	0	0	0	0	0	1	1.9	1.9
	소계	0	0	0	0	0	0	3	124.6	124.6

구분 / 마약류별	국가별	2011			2012			2013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사일로시빈(g)	캐나다	0	0	0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1	103	103	4	685	685
	미국	0	0	0	1	7	7	0	0	0
	독일	0	0	0	1	58	58	0	0	0
	소계	0	0	0	3	168	168	4	685	685
살비아 디비노럼(g)	미국	0	0	0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1	8	8
	영국	0	0	0	0	0	0	1	2	2
	소계	0	0	0	0	0	0	2	10	10
GHB(g)	중국	0	0	0	0	0	0	1	1,244	1,244
	네덜란드	0	0	0	0	0	0	1	93	93
	캐나다	0	0	0	0	0	0	1	21	21
	소계	0	0	0	0	0	0	3	1,358	1,358
알프라졸람(g)	미국	0	0	0	0	0	0	1	124	124
	인도	1	40	40	0	0	0	2	64	36
	중국	0	0	0	1	40	40	1	120	120
	독일	0	0	0	0	0	0	1	40	40
	소계	1	40	40	1	40	40	7	1,666	1,638
대마종자(g)	영국	3	2.4	2.4	5	87	87	18	56	55
	중국	0	0	0	1	257	257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16	55	55
	말레이시아	0	0	0	0	0	0	2	11	11
	캐나다	0	0	0	0	0	0	1	5	5
	슬로베니아	0	0	0	0	0	0	1	24	24
	스페인	0	0	0	0	0	0	4	19	19
	소계	4	42.4	42.4	7	384	384	45	1,817	1,788
로라제팜(g)	중국	0	0	0	1	40	40	1	333	333
졸피뎀(g)	일본	0	0	0	0	0	0	1	20	20
	홍콩	0	0	0	1	26	26	0	0	0
	소계	0	0	0	1	26	26	1	20	20

구분 / 마약류별	국가별	2011			2012			2013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디아제팜(g)	태국	1	14	14	0	0	0	1	119	119
	중국	0	0	0	1	115	115	1	40	40
	소계	1	14	14	1	115	115	2	159	159
메스케치논(g)	헝가리	1	0.8	0.8	0	0	0	0	0	0
	스페인	0	0	0	1	74	74	0	0	0
	미국	1	0.8	0.8	1	74	74	4	6.4	5.9
	소계	2	1.6	1.6	2	148	148	4	6.4	5.9
바르비탈	중국	1	4	4	0	0	0	4	909	909
	태국	0	0	0	0	0	0	1	172	172
	소계	1	4	4	0	0	0	5	1,081	1,081
클로나제팜	미국	0	0	0	0	0	0	1	30	30
	태국	0	0	0	0	0	0	1	59	59
	방글라데시	0	0	0	0	0	0	1	66	66
	소계	0	0	0	0	0	0	3	155	155
슈도에페드린	중국	0	0	0	1	9,943	9,943	0	0	0
코데인	미국	0	0	0	0	0	0	1	10.5	10.5
거통편(g)	중국	1	3	3	1	165	124	4	909	909
복방감초편(정)	중국	0	0	0	1	33	30	1	105	105
테마제팜(g)	미국	0	0	0	1	18	18	0	0	0
디메칠트립타민	네덜란드	0	0	0	0	0	0	2	1,598	1,598
러미나(g)	미국	1	1.5	1.4	0	0	0	0	0	0
리저직산 아미드(g)	미국	1	113	113	1	23	23	0	0	0
클로나제팜(g)	인도	1	40	40	0	0	0	0	0	0
LSD(g)	네덜란드	0	0	0	1	11	11	0	0	0
BK-MBDB(g)	헝가리	0	0	0	1	3	3	0	0	0
Pfpp, MeOPP(g)	중국	0	0	0	1	3	3	0	0	0
MDPV(g)	스페인	0	0	0	1	6	6	0	0	0
조피크론(g)	중국	0	0	0	1	66	66	0	0	0

※ ( )는 압수량

표 3-17 생아편 밀반입 현황 (단위 : g)

연도별 / 국적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4	2	0	0	0
이란	24	0	0	0	0
중국	0	2	0	0	0

표 3-18 헤로인 밀반입 현황 (단위 : g)

연도별 / 국적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910 (1,897)	31 (31)	0	7(3)	0
중국	0	0	0	0	0
베트남	16(3)	0	0	7(3)	0
캄보디아	1,559(1,559)	0	0	0	0
인도	335(335)	0	0	0	0
미국	0	1(1)	0	0	0
키르기스스탄	0	30(30)	0	0	0

※ ( )는 압수량

▶ 2009년도에는 다량의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소량의 밀반입이 적발되었고, 2011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2012년도에도 소량의 밀반입 사례만 있고, 2013년은 적발된 사례 없음

표 3-19 코카인 밀반입 현황 (단위 : g)

국적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8(58)	0	0	3(3)	4(1,202)
브라질	0	0	0	0	0
룩셈부르크	0	0	0	0	0
호주	0	0	0	0	0
미국	58(58)	0	0	3(3)	3(1,192)
프랑스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0	1(10)
홍콩	0	0	0	0	0
파나마	0	0	2,100(2,100)	0	0

※ ( )는 압수량

▶ 2009년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코카인 58.3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령하다가 적발되었음

▶ 2011년도에는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에서 성명불상자가 밀반입하려다 유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약 2,100g을 적발하였음

▶ 2012년도에는 내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음

▶ 2013년도에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기탁화물 내 보관되어 있던 신발 4짝에 코카인 300g씩을 은닉하여 총 약 1,180g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음

표 3-20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현황 (단위 : g)

연도별 / 국적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0,223(10,205)	8,642(8,201)	19,015(18,416)	23,418(19,033)	29,155(29,076)
중국	5,891(5,873)	4,818(4,662)	5,843(5,254)	11,880(9,836)	13,719(13,640)
홍콩	0	0	1.28(1.28)	0	18(18)
필리핀	12(12)	182(130)	2,081.5(2,081.5)	1,427(1,427)	15(15)
미국	4(4)	0.8(0.4)	17.8(8)	212(212)	1,855(1,855)
대만	79(79)	998(998)	0	5,000(2,660)	0
캐나다	0	220(171)	3,244.8(3,244.8)	0	0
태국	61(61)	0	0	4(4)	28(28)
말레이시아	0	0.4(0.4)	0	0	0
마카오	0	0	0	0	6,240(6,240)
남아프리카공화국	4,175(4,175)	0	3,571(3,571)	0	0
멕시코	0	409(225)	0	0	0
베트남	0	36(36)	17.5(17.5)	15(14)	0
가나	0	1,978(1,978)	0	0	0
말리	0	0	4,237.6(4,237.6)	0	4,092(4,092)
캄보디아	0	0	0	616(616)	0
피지	0	0	0	2,491(2,491)	0
케냐	0	0	0	1,760(1,760)	3,186(3,186)
인도네시아	0	0	0	12(12)	0
체코					1(1)

※ ( )는 압수량

▶ 2013년도 외국산 메트암페타민 밀반입량은 총 29,155g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고 압수량도 29,076g으로 52.7% 증가

▶ 국내 밀반입된 외국산 마약류 중 중국산 메트암페타민 밀반입량은 13,719g 전체 외국산 메트암페타민 밀반입량의 47.1%를 차지하여 여전히 중국이 핵심 수출 국가임을 알 수 있고, 이 외에도 미국, 마카오,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과 케냐, 말리, 피지 등 아프리카지역 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 밀반입되는 등 최근 메트암페타민의 공급루트가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음

표 3-21 대마초 밀반입 현황

(단위 : g)

연도별 / 국적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1,792(21,792)	276(276)	618(617)	2,726(2,726)	7,370(7,347)
나이지리아	4,263(4,263)	0	0	0	2,954(2,954)
미국	218(218)	199(199)	379(378)	2,630(2,630)	1,548(1,544)
캐나다	8(8)	9(9)	98(98)	19(19)	859(859)
남아프리카공화국	16,334(16,334)	2(2)	0	0	0
중국	0	0	92(92)	0	0
호주	0	0	0	5(5)	0
필리핀	0	10(10)	0	0	6(6)
태국	7(7)	0	0	40(40)	68(50)
체코	0	10(10)	0	0	0
베트남	0	1(1)	0	0	0
영국	2(2)	0	6(6)	0	20(20)
뉴질랜드	0	0.3(0.3)	41(41)	0	0
독일	0	0	0	0	21(21)
벨기에	0	0	0	0	5(5)
프랑스	0	0	0	0	10(10)
러시아	0	0	0	0	1,000(999)
스리랑카	0	2(2)	0	5(5)	0
네덜란드	949(949)	42(42)	0	5(5)	857(857)
일본	11(11)	0	0	0	0
아일랜드	0	0	0	4(4)	0
멕시코	0	0	0	18(18)	0

※ ( )는 압수량

▶ 2013년도 전체 대마초 밀반입량은 7,370g으로 전년대비 170% 증가

▶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량으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 2010년, 2011년은 대체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적의 학원 강사 등 국내 체류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의 소규모 밀수 사례가 많았고, 2012년도에는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944.57g을 밀수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3년도에 음반 판매업자가 국제우편물로 대마 837g을 밀수한 사건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대마가루 1,000g을 밀수한 사건,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435g을 밀수한 사건이 적발되는 등 대규모 밀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표 3–22 신종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 g)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야바	태국	53(0)	0	0	0	1,267(1,267)
	중국	0	1.6(1.6)	0	0	0
	라오스	0	0	0	133(133)	0
MDMA	캐나다	0	167(2)	0	0	0
	미국	0	6(6)	3(0.3)	63(63)	22(22)
	영국	0	0	0	10(10)	0
	아일랜드	0	0	0	1(1)	0
	독일	0	0	0	0	20(20)
	베트남	5(5)	0.3(0.3)	0	0	0
	중국	98(98)	0	0	1,268(700)	0
	일본	0	0	0	0	2(2)
	대만	0	6(6)	0	0	0
JWH 및 유사체	영국	30(30)	2(2)	12(12)	3(3)	77(76)
	네덜란드	27(24)	0	0	0	0
	미국	0	119(119)	146(137)	6,355(3,587)	1,363(605)
	중국	0	24(24)	0	0	0
	뉴질랜드	0	40(40)	76(65)	6(6)	0
	헝가리	0	0	68(68)	807(804)	0
	대만	0	0	65(65)	0	0
	호주	0	0	10(10)	0	0
	일본	0	0	10(10)	0	72(72)
	베트남	0	0	0	0.1(0.1)	0
	스페인	0	0	0	52(52)	264(264)
	네덜란드	0	0	0	0	47(47)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케타민	중국	128(126)	0	0	5(5)	0
	미국	0	0	0	0	5(5)
	대만	16(16)	36(36)	0	1(1)	0
	캐나다	0	0	2.8(2.8)	0	0
크라톰	미국	0	0	16(16)	36(36)	22(22)
	영국	5(5)	0	0	0	6(6)
	캐나다	0	72(72)	0	0	0
	네덜란드	0	10(10)	0	3(3)	8(8)
사일로시빈	네덜란드	0	20(20)	0	103(103)	685(685)
	미국	0	0	0	7(7)	0
	독일	0	0	0	58(58)	0
살비아디비노럼	미국	2(2)	0	0	0	8(8)
	네덜란드	0	1(1)	0	0	0
	영국	2(2)	27(27)	0	0	2(2)
알프라졸람	미국	0	0	0	0	124(124)
	인도	0	0	40(40)	0	36(36)
	중국	0	0	0	40(40)	120(120)
	독일	0	0	0	0	40(40)
클로나제팜	미국	0	0	0	0	30(30)
	인도	0	0	40(40)	0	0
	태국	0	0	0	0	60(60)
	방글라데시	0	0	0	0	66(66)
졸피뎀	미국	30(30)	0	0	0	0
	홍콩	0	0	0	26(26)	0
	일본	0	0	0	0	20(20)
벤질피페라진	영국	24(24)	0	0	0	0
	태국	7(7)	0	0	0	0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암페타민	미국	0	68(68)	0	0	0
로라제팜	미국	43(43)	0	0	0	0
	중국	0	0	0	40(40)	333(333)
디아제팜	태국	0	0	14(14)	14(14)	119(119)
	중국	0	0	0	115(115)	40(39)
리저직산아마이드	미국	0	0	113(113)	23(23)	74(74)
	영국	0	0	0	0	10(10)
메스케치논	헝가리	0	0	0.8(0.8)	0	0
	스페인	0	0	0	74(74)	0
	미국	0	0	0	0	6(6)
바르비탈	중국	0	4(4)	0	0	172(172)
	태국	0	0	0	0	33(33)
GHB	중국	0	0	0	0	1,244(1,244)
	네덜란드	0	0	0	0	93(93)
	캐나다	0	0	0	0	21(21)
TFMPP	미국	2(2)	0	0	0	0
테마제팜	미국	0	0	0	18(18)	0
카리소프로돌	홍콩	0	0	0	10(10)	0
러미나	미국	0	0	1.5(1.4)	0	0
LSD	네덜란드	0	0	0	11(11)	0
BK-MBDB	헝가리	0	0	0	3(3)	0
Pfpp, MeOPP	중국	0	0	0	3(3)	0
MDPV	스페인	0	0	0	6(6)	0
	일본	0	0	0	0	29(29)
조피크론	중국	0	0	0	66(66)	0
합계		472(414)	604(439)	618(595)	9,362(5,204)	6,539(5,781)

※ ( )는 압수량

▶ 그러나 2013년도 JWH 및 유사체를 제외한 신종 유사마약류 밀반입량은 5,176g으로 전년 3,007g으로 72.1% 증가하였음

▶ JWH, MDMA는 해외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의 국내인은 물론 외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원 강사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밀반입하고 있음

▶ 최근 밀반입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뿐만 아니라 신종 유사마약인 JWH-018,[6] MDMA (엑스터시), YABA,[7] 크라톰,[8] 벤질피페라진,[9] 케타민, 알프라졸람 등 다양해지고 있음

▶ 일부 신종 유사마약은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하기 쉽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환각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젊은 층과 중독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임

6] 일명 '합성대마'로 대마초와 비슷한 환각효과를 나타내며, 대마와 달리 냄새가 없고, 환각성 · 마취성이 훨씬 강함

7]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 · 중독성이 강함

8]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태국 등 원주민들이 힘든 일을 견뎌내기 그 잎을 씹거나 차로 마시거나 그 분말을 타서 복용해 왔으며, 각성 · 진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9] 화학물질 합성에 주로 사용되는 중간물질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고, 항우울 효과 및 인체 내에 흥분제로 작용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표 3-23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속사범수	890	858	295	359	393
증감률(%)	-4.1	-3.6	-65.6	38.6	9.5

▶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영향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07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8년도부터는 영어권 나라 출신 강사의 국내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으로 2011년도에는 27개국 총 295명으로 전년대비 65.6% 감소하다가 2012년도에는 영어권 나라 출신 강사 및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범죄 증가로 총 31개국 359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38.6% 증가하였음

▶ 2013년도에는 30개국 393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음

표 3-24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 마약류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890(100)	858(100)	295(100)	359(100)	393(100)
마약	32(3.6)	43(5.0)	12(4.1)	26(7.3)	19(4.8)
향정	547(61.5)	390(45.5)	208(70.5)	185(51.5)	235(59.8)
대마	311(34.9)	425(49.5)	75(25.4)	148(41.2)	139(35.4)

※ ( )는 구성비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하였고, 2012년도에는 향정사범이 51.5%, 대마사범 41.2%, 2013년도에는 향정사범이 59.8%, 대마사범 35.4%를 보임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JWH-018 등 신종 향정 마약류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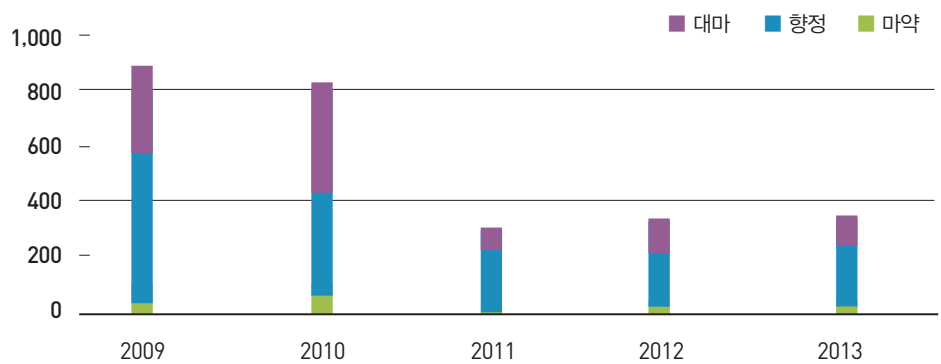

표 3–25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 명)

연도별 / 순 위	2009	2010	2011	2012	2013
1	태국	태국	중국	미국	미국
2	미국	스리랑카	미국	중국	중국
3	중국	미국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

그림 3–10 2013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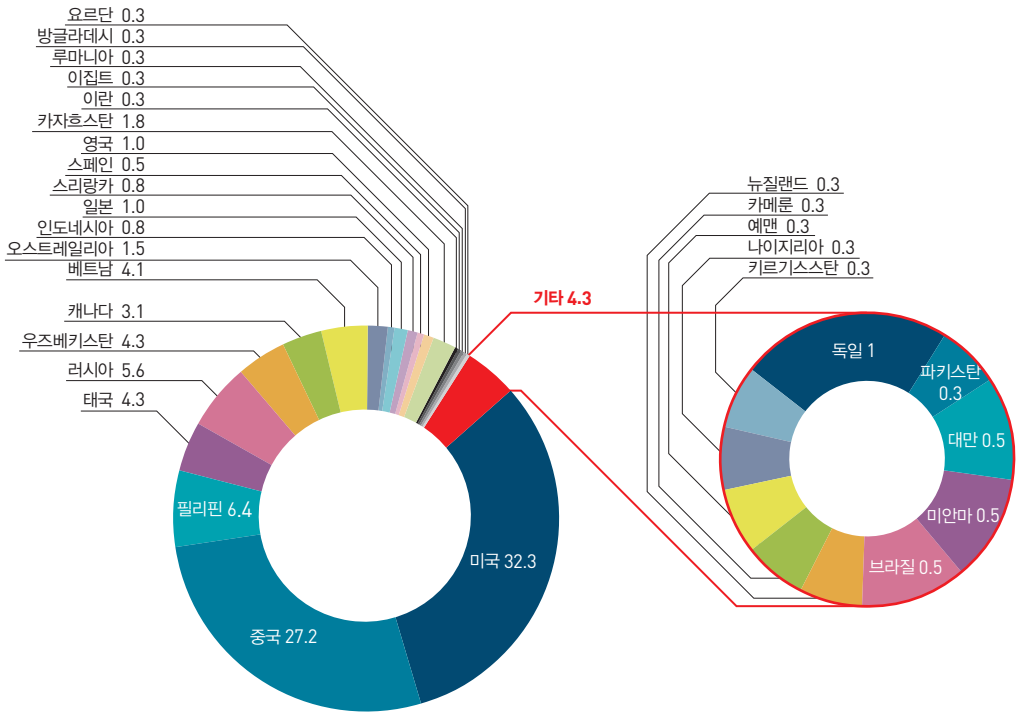

표 3-26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890(100)	858(100)	295(100)	359(100)	393(100)
밀조	0(0.0)	1(0.1)	2(0.7)	0(0.0)	0(0.0)
밀수	34(3.8)	25(2.9)	18(6.1)	21(5.8)	60(15.3)
밀매	61(6.9)	37(4.3)	55(18.6)	80(22.2)	91(23.2)
사용	795(89.3)	704(82.1)	186(63.1)	222(61.8)	178(45.2)
기타	0(0.0)	91(10.6)	34(11.5)	36(10.2)	64(16.3)

※ ( )는 구성비

▶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2003년도까지 밀수, 밀매, 사용사범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였으나, 2004년도부터 사용사범 급증과 함께 그 점유율도 2009년도에 89.3%까지 늘어났으나 2010년도부터 사용사범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반면 밀매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31개국)이 다변화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에도 다양한 국적 중에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전체적으로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강사)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권(공장 근로자) 국적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11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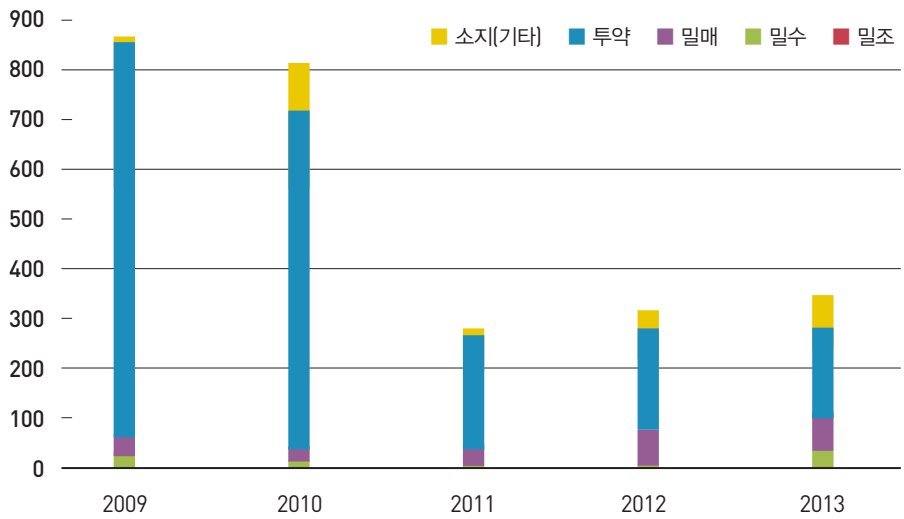

표 3-27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4(100)	25(100)	18(100)	21(100)	60(100)
나이지리아	1(2.9)	2(8.0)	1(5.6)		
중국	4(11.8)	7(28.0)	8(44.4)	3(14.3)	21(35)
미국	3(8.8)	5(20.0)	4(22.2)	8(38.1)	23(38.3)
일본	1(2.9)				
호주	1(2.9)				
러시아	4(11.8)			1(4.7)	3(5)
필리핀	1(2.9)				17(28.3)
태국	10(29.4)	8(32.0)		1(4.7)	
이란	2(5.9)		2(11.1)		
캐나다	3(8.8)		3(16.7)	2(9.6)	1(1.7)
가나	1(2.9)				
인도네시아					1(1.7)
뉴질랜드	2(5.9)				
방글라데시	1(2.9)	1(4.0)			
베트남		1(4.0)		2(9.6)	4(6.7)
파키스탄		1(4.0)			
몰도바				1(4.7)	
우즈베키스탄				3(14.3)	
독일					1(1.7)
영국					1(1.7)

※ ( )는 구성비

표 3-28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 명)

연도별 /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1	태국	태국	중국	미국	미국
2	중국 / 러시아	중국	미국	중국 / 우즈베키스탄	중국
3	미국 / 캐나다	미국	캐나다	캐나다 / 베트남	필리핀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경우, 2004년도 이란인(39.1%), 2005년도 미국인(13.0%), 중국인(13.0%), 2006년도 나이지리아인(40.0%), 2007년도에는 중국인(28.6%)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태국인이 각 64.7%, 29.4%, 32.0%를 점유했으며, 2011년도에는 중국인(44.4%), 2012년도에는 미국인(38.1%), 2013년도에는 미국인(38.3%)이 가장 많았음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가. 개 요

▶ 예전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 단체로서 그 활동도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마약 밀수, 밀매를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10년도부터 조직폭력배가 마약밀매와 밀수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012년도 사용사범 29명, 밀매사범 8명, 밀수사범 5명이고 2013년도 사용사범 15명, 밀매사범 11명, 밀수사범 3명)

▶ 2013년도 마약류범죄 연류 조직폭력배는 25개파 38명임

▶ 국내 폭력조직이 대만 마약조직 및 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밀수 · 밀매에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특히 외국산 마약류 중 폭력조직에 의한 마약 밀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약범죄와 조직범죄를 통합수사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수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표 3-29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	점유율(%)
2009	11,875	32	0.3
2010	9,732	51	0.5
2011	9,174	36	0.4
2012	9,255	49	0.5
2013	9,764	38	0.4

표 3-30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기타)
2009	32(100)	0	2(6.3)	8(25.0)	19(59.4)	3(9.4)
2010	51(100)	0	7(13.7)	19(37.3)	17(33.3)	8(15.7)
2011	36(100)	0	4(11.1)	12(33.3)	16(44.4)	4(11.1)
2012	49(100)	0	5(10.2)	8(16.3)	29(59.2)	7(14.3)
2013	38(100)	0	3(7.9)	11(28.9)	15(39.5)	9(23.7)

※ ( )는 구성비

표 3-31 2013년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사용	소지 (기타)	합 계
합계							
서울	영등포중앙파			1			1
	미아리텍사스파			2			2
	신림이글스파				1		1
경기	수원남문파(수원)			1	1		2
	수원북문파(수원)					1	1
	국제마피아(성남)				1		1
	이천파(이천)				1		1
	인천간석식구파(인천)			1			1
	안양타이거파(안양)		1				1
	동두천식구파(동두천)					1	1
	주내파(파주)				1		1
충청	태평양파(충남 아산)			2	2		4
	파라다이스파(청주)				1		1
	광천블랙파(홍성)				1		1
영남	칠성파(부산)		2		4	2	8
	동성로파(대구)					2	2
	지산동파(대구)			1			1
	일호파(거제)			1			1
	남목파(울산)				1		1
	신동방파(밀양)					1	1
	온천동파(부산)			1			1
	신목공파(울산)					1	1
	유태파(김해)				1		1
	재건20세기파(부산)					1	1
호남	오거리파(전주)					1	1

나. 대표적 개입사례

밀제조관련 사건

▶ 1999. 5.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대신동파」조직원 2명이 판매를 목적으로 필로폰 9kg을 밀제조한 후 대구 · 부산 지역에 밀매 (대구지검)

▶ 2001.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행동대장 ○○○ 등이 필로폰 약 10kg을 밀제조한 후 부산 · 대구 지역에 밀매 (서울지검)

▶ 2003. 11.경 일본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마쯔바카이파」부두목 ○○ ○○○○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반입한 필로폰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려고 필로폰 반제품 140㎖를 화장품 통속에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다 적발 (서울지검)

밀수관련 사건

▶ 2007. 8.경 성남「국제 마피아파」행동대원 ○○○ 중국에서 필로폰 11.9g 밀반입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7. 9.경 일본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중간 보스 ○○ ○○○○ 등 피의자들은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반입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필로폰 약 615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반입하고, 같은 해 11. 8.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부산지검)

▶ 2009. 9.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북문파」행동대원 ○○○ 태국에서 필로폰 9.74g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 LA 한인지역 갱단「LGKK」조직원 ○○○은 특수강도죄 등 혐의로

2001. 6.경 강제 추방되어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48.2g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일본 야쿠자 조직중 하나인「스미요시파」간부 ○○○ 필로폰 987g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밀반입출할 목적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신림동이글스파」행동대원 ○○○ 중국에서 필로폰 46.58g 밀반입 (부산동부지청)

▶ 2010. 4.경 중국 폭력조직「흑사회」심양 두목 ○○○ 중국에서 필로폰 900g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0. 3.~4.경 충주지역 폭력조직「신석만이파」부두목인 ○○○ 태국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7g 밀반입 (2011. 3. 청주지검)

▶ 2011. 12.경~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정읍식구파」행동대원 ○○○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 밀반입 (2012. 2. 전주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꼴망파」행동대원 ○○○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8g 밀반입 (2012. 2. 서울중앙지검)

▶ 2011. 10.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북문파」행동대원 ○○○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밀반입 (2012. 5. 수원지검)

▶ 2012. 6.~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영도파」행동대원 ○○○ 등 4명 대만 마약밀매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kg 밀반입 (부산지검)

▶ 2012. 10.경 일본 야쿠자「스미요시파」조직원과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4kg을 밀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약 63g 밀반입 (수원지검)

▶ 2013.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산칠성파」 행동대원 ○○○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7㎏을 대형 커피머신에 은닉하여 중국 청도항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밀매관련 사건

▶ 2007. 3.경 서울 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 ○○○는 사건외 ○○○에게 필로폰 약 0.58g을 3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는 등 투약하고 소지 (고양지청)

▶ 2007. 4.경 청주 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 ○○○, 청주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은 공모하여 사건외 김○○에게 16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8.62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 (대전지검)

▶ 2007. 8.경 제주지역 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 ○○○필로폰 밀매 (제주지검)

▶ 2008.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 ○○○은 대구 시내 일원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0.18g을 밀매 (대구서부지청)

▶ 2008. 2.~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면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및 투약 (울산지검)

▶ 2008.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 ○○○ 필로폰 약 253.5g 밀매 알선 및 2g 매수 (인천지검)

▶ 2008. 8.경 부평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 ○○○ 필로폰 약 1.4g 밀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 2009.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 ○○○ 필로폰 약 0.12g 밀매 및 투약 (울산지검)

▶ 2009. 8.경 창원지역 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 ○○○ 필로폰 약 0.5g 밀매 (창원지검)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조직중 하나인 「스미요시파」 조직원 ○○○ 필로폰 0.4g 매도 등 6회에 걸쳐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 2009. 8.~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 ○○○ 필로폰 0.4g 매도 등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 필로폰 0.3g 매도 및 3.5g 매수 (평택지청)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조직중 하나인 「스미요시파」 조직원 ○○○ 필로폰 0.4g 매도 등 6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서울서부지검)

▶ 2009. 3.~2009. 12.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천호동 구사거리파」 조직원 ○○○ 필로폰 0.7g 밀매 등 수수 (서울중앙지검)

▶ 2009. 6.~2010.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 ○○○ 필로폰 0.4g 밀매 등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8. 4.~2010. 1.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 ○○○ 필로폰 0.8g 밀매 등 수회에 걸쳐 매수, 소지, 투약 (수원지검)

▶ 2009. 9.~2010.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 ○○○ 필로폰 0.6g 매도 등 수회 밀매 및 교부 (수원지검)

▶ 2010. 7~8.경 평택지역 폭력조직「전국구파」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 (천안지청)

▶ 2010. 8.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간석동식구파」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10. 12.~2011.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인천 부평식구파」행동대원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플 8,000앰플(20㎖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 (인천지검)

▶ 2011. 1.경 부천지역 폭력조직「소사식구파」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 (부천지청)

▶ 2011. 2.~4.경 군산지역 폭력조직「백학관파」행동대원 ○○○ 필로폰 약 9.8g 밀매 및 약 11.3g 알선 (전주지검)

▶ 2011. 3.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간석동식구파」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 (부천지청)

▶ 2011.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부천식구파」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 (부천지청)

▶ 2011. 4.경 광주지역 폭력조직「수기동파」두목 ○○○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군산백학관파」행동대원 ○○○ 필로폰 밀매 (전주지검)

▶ 2011.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크라운파」간부급 조직원 ○○○ 필로폰 매수 (전주지검)

▶ 2012.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대전지역「진술파」행동대원 ○○○ 등 4명 필로폰 밀매 (대전지검)

▶ 2013. 1.경 경북 김천지역 폭력조직「제일파」조직원 ○○○ 필로폰 매수 (청주지검)

▶ 2013. 1.경 경북 대구지역 폭력조직「진산동파」조직원 ○○○ 필로폰 알선 (광주지검)

▶ 2013. 3.경 경남 거제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조직원 ○○○ 필로폰 매수 (광주지검)

▶ 2013.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미아리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13. 5.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영등포중앙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3. 5.경 천안지역 폭력조직 「태평양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천안지청)

▶ 2013.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3.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전동파」 조직원 ○○○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소지 · 투약 등 관련 사건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 ○○○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해운대지부」 조직원 ○○○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 ○○○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울산지검)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 필로폰 수수 (안양지청)

▶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 ○○○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 ○○○ 필로폰 교부 (수원지검)

▶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 필로폰 약 80g 매수 및 투약 (인천지검)

▶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 ○○○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의정부지검)

▶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인천지검)

▶ 2009. 1.~3.경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 ○○○ 필로폰 20g 매수 및 투약 (의정부지검)

▶ 2006. 11.경 송탄지역 폭력조직「중앙훼미리파」부두목 ○○○ 필로폰 소지 (인천지검)

▶ 2008. 12.경 광양지역 폭력조직「광양백호파」두목 ○○○ 필로폰 약 3g 매수 (울산지검)

▶ 2008.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돈지파」두목 ○○○ 필로폰 매수 (대구서부지청)

▶ 2009.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돈지파」두목 ○○○ 필로폰 매수 (대구서부지청)

▶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부평식구파」조직원 ○○○ 필로폰 4.46g 소지 (인천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행동대장 ○○○ 필로폰 0.03g 투약 (부산지검)

▶ 2010. 1.~11.경 의정부지역 폭력조직「신세븐파」행동대장 ○○○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10.경 평택지역 폭력조직「청하위생파」조직원 ○○○ 필로폰 0.4g 매수 등 투약 (평택지청)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돈암동파」조직원 ○○○ 필로폰 0.14g 투약 (평택지청)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부대식구파」행동대장 ○○○ 필로폰 100g 매수 (부산지검)

▶ 2010. 3.~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명동신상사파」조직원 ○○○ 필로폰 2.5g 매수 (고양지청)

▶ 2009. 2.~2010.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주안식구파」조직원 ○○○ 필로폰 0.5g 매수 등 투약 (인천지검)

▶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 ○○○ 필로폰 0.15g 수수 등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 등 3명 필로폰 투약 (안양지청)

▶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 ○○○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약 1.73g 소지 (부산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 ○○○ 등 2명 필로폰 투약(전주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행동대장 ○○○ 등 2명 필로폰 3.5g 매수 및 투약 (수원지검)

▶ 2012.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 필로폰 2.35g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6.경 포항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포항지청)

▶ 2012.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 ○○○ 필로폰 0.29g 소지 및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비치파」부두목 ○○○ 필로폰 0.18g 소지 및 투약 (전주지검)

▶ 2012. 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정읍식구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12. 11.경 안양지역 폭력조직「타이거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12. 1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AP파」행동대원 ○○○ 필로폰 3.8g 소지 및 투약 (안양지청)

▶ 2012.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행동대장 ○○○ 필로폰 1.68g 소지 및 투약 (부산지검)

▶ 2012.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꼴망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인천지검)

▶ 2013.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기장통합파」행동대원 ○○○ 필로폰 소지 (서울남부지검)

▶ 2013. 3.경 전주지역 폭력조직「전주오거리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3.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동성로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2013. 4.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남문파」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2013.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동성로파」행동대원 ○○○ 필로폰 소지 (창원지검)

▶ 2013. 7.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2013. 7.경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성남지청)

▶ 2013.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7.경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밀양지청)

▶ 2013. 7.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11.경 김해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 ○○○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보복범죄 관련 사건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 ○○○ 은 1999. 11.경 피해자 ○○○가 청주지검에서 필로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 협박 (대전지검)

8.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32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1,875(100)	9,732(100)	9,174(100)	9,255(100)	9,764(100)
서울	2,482(20.9)	1,964(20.2)	1,879(20.5)	1,777(19.2)	1,837(18.8)
인천 · 경기	3,485(29.3)	3,074(31.6)	2,478(27.0)	2,684(29.0)	2,731(28.0)
부산	1,405(11.8)	1,162(11.9)	1,176(12.8)	1,254(13.5)	1,159(11.9)
울산 · 경남	982(8.3)	912(9.4)	963(10.5)	1,001(10.8)	1,098(11.2)
대구 · 경북	1,180(9.9)	769(7.9)	784(8.5)	803(8.7)	909(9.3)
대전 · 충남	687(5.8)	601(6.2)	452(4.9)	386(4.2)	373(3.8)
강원	264(2.2)	262(2.7)	324(3.5)	197(2.1)	243(2.5)
전북	143(1.2)	91(0.9)	97(1.1)	105(1.1)	167(1.7)
광주 · 전남	384(3.2)	181(1.9)	226(2.5)	202(2.2)	270(2.8)
충북	301(2.5)	152(1.6)	200(2.2)	187(2.0)	140(1.4)
제주	23(0.2)	19(0.2)	46(0.5)	45(0.5)	40(0.4)
외국	64(0.5)	32(0.3)	33(0.4)	23(0.2)	45(0.5)
불상	475(4.0)	513(5.3)	516(5.6)	591(6.4)	752(7.7)

※ ( )는 구성비

▶ 2013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46.8%), 부산(11.9%), 울산 · 경남(11.2%), 대구 · 경북(9.3%), 대전 · 충남(3.8%) 순으로 전체사범의 79.2%(전년도 81.2%)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12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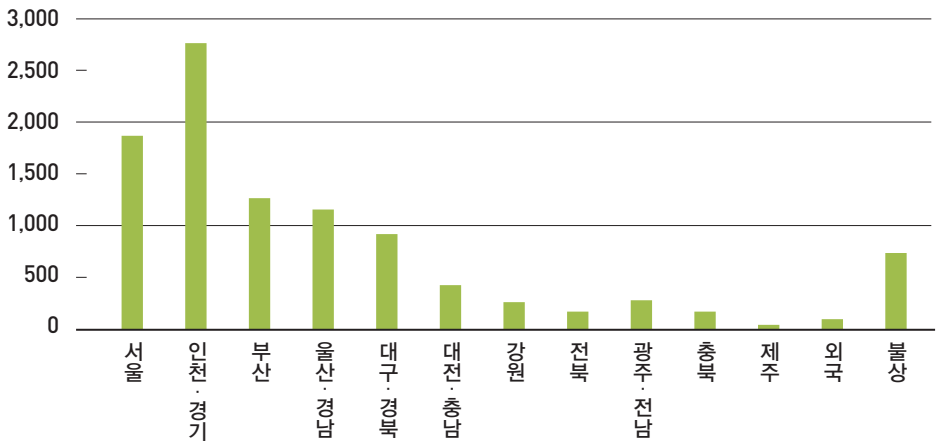

▶ 전년대비 단속인원은 충북지역 25.1%, 제주지역 11.1%, 부산지역 7.6%, 대전 · 충남 3.4% 순으로 감소했고, 전북지역 59.0%, 광주 · 전남지역 33.7%, 대구 · 경북지역 13.2%, 울산 · 경남지역 9.7%, 서울지역 3.4% 순으로 증가함

표 3-33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현황 (단위 : 명)

구분 / 지역별	2012	2013	증감률(%)
서울	1,777	1,837	3.4
인천 · 경기	2,684	2,732	1.8
부산	1,254	1,159	-7.6
울산 · 경남	1,001	1,098	9.7
대구 · 경북	803	909	13.2
대전 · 충남	386	373	-3.4
강원	197	243	23.4
전북	105	167	59.0
광주 · 전남	202	270	33.7
충북	187	140	-25.1
제주	45	40	-11.1
외국	23	45	95.7
불상	591	752	27.2

표 3-34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 지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198 (100)	1,124 (100)	759 (100)	582 (100)	685 (100)
서울	297 (13.5)	62 (5.5)	81 (10.7)	55 (9.5)	52 (7.6)
인천 · 경기	828 (37.7)	435 (38.7)	210 (27.7)	194 (33.3)	224 (32.7)
부산	53 (2.4)	22 (2.0)	28 (3.7)	32 (5.5)	32 (4.7)
울산 · 경남	212 (9.6)	124 (11.0)	97 (12.8)	55 (9.5)	85 (12.4)
대구 · 경북	179 (8.1)	72 (6.4)	77 (10.1)	55 (9.5)	80 (11.7)
대전 · 충남	258 (11.7)	224 (19.9)	42 (5.5)	21 (3.6)	18 (2.6)
강원	43 (2.0)	14 (1.2)	24 (3.2)	26 (4.5)	23 (3.4)
전북	40 (1.8)	17 (1.5)	7 (0.9)	11 (1.9)	17 (2.5)
광주 · 전남	172 (7.8)	84 (7.5)	108 (14.2)	82 (14.1)	98 (14.3)
충북	88 (4.0)	51 (4.5)	61 (8.0)	40 (6.9)	15 (2.2)
제 주	1 (0.0)	1 (0.1)	1 (0.1)	2 (0.3)	3 (0.4)
외국	10 (0.5)	3 (0.3)	0 (0.0)	0 (0.0)	5 (0.7)
불상	17 (0.8)	15 (1.3)	23 (3.0)	9 (1.5)	33 (4.8)

※ ( )는 구성비

그림 3-13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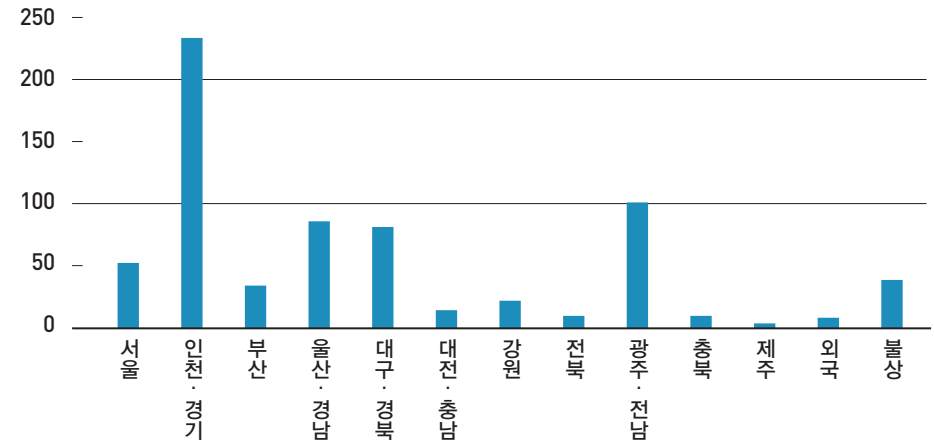

▶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마약사범 점유율은 인천 · 경기지역(32.7%), 광주 · 전남지역(14.3%), 울산 · 경남(12.4%), 대구 · 경북(11.7%), 서울지역(7.6%), 부산지역(4.7%), 전북지역(2.5%)순으로 나타남

▶ 울산 · 경남지역, 대구 · 경북지역, 전북지역의 마약사범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서울지역, 인천 · 경기지역, 대전 · 충남지역, 광주 · 전남지역, 충북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표 3-35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7,965 (100)	6,771 (100)	7,226 (100)	7,631 (100)	7,902 (100)
서울	1,785 (22.4)	1,479 (21.8)	1,516 (21.0)	1,460 (19.1)	1,428 (18.1)
인천 · 경기	2,006 (25.2)	1,803 (26.6)	1,917 (26.5)	2,096 (27.5)	2,093 (26.5)
부산	1,253 (15.7)	1,058 (15.6)	1,102 (15.3)	1,174 (15.4)	1,077 (13.6)
울산 · 경남	686 (8.6)	730 (10.8)	816 (11.3)	899 (11.8)	968 (12.3)
대구 · 경북	852 (10.7)	618 (9.1)	666 (9.2)	696 (9.1)	764 (9.7)
대전 · 충남	331 (4.2)	293 (4.3)	274 (3.8)	284 (3.7)	292 (3.7)
강원	161 (2.0)	111 (1.6)	163 (2.3)	135 (1.8)	169 (2.1)
전북	88 (1.1)	59 (0.9)	86 (1.2)	91 (1.2)	144 (1.8)
광주 · 전남	190 (2.4)	85 (1.3)	104 (1.4)	109 (1.4)	145 (1.8)
충북	148 (1.9)	58 (0.9)	90 (1.2)	96 (1.3)	96 (1.2)
제주	22 (0.3)	12 (0.2)	43 (0.6)	40 (0.5)	37 (0.5)
외국	42 (0.5)	24 (0.4)	28 (0.4)	18 (0.2)	26 (0.3)
불상	401 (5.0)	441 (6.5)	421 (5.8)	533 (7.0)	663 (8.4)

※ ( )는 구성비

그림 3-14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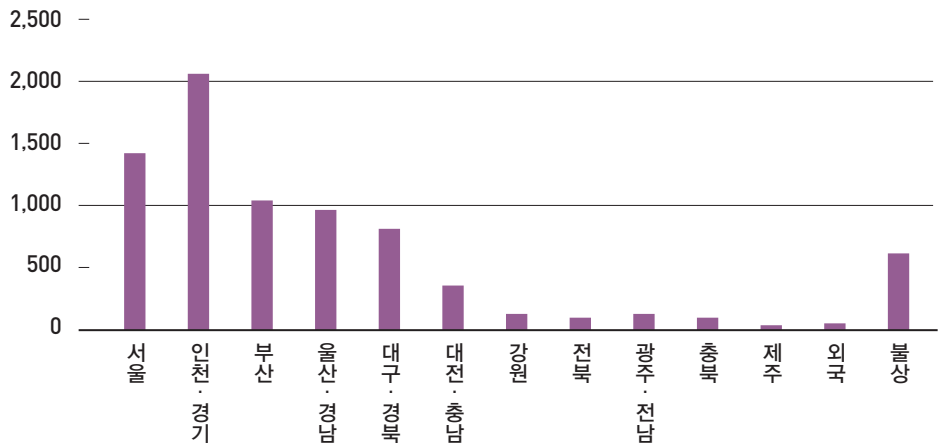

▶ 2013년도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인천 · 경기지역(26.5%), 서울지역(18.1%), 부산지역(13.6%), 울산 · 경남지역(12.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울산 · 경남지역, 대구 · 경북지역, 강원지역은 증가한 반면, 서울지역, 인천 · 경기지역, 부산지역, 제주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표 3-36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712 (100)	1,837 (100)	1,189 (100)	1,042 (100)	1,177 (100)
서울	400 (23.4)	423 (23.0)	282 (23.7)	262 (25.1)	357 (30.3)
인천 · 경기	651 (38.0)	836 (45.5)	351 (29.5)	394 (37.8)	414 (35.2)
부산	99 (5.8)	82 (4.5)	46 (3.9)	48 (4.6)	50 (4.2)
울산 · 경남	84 (4.9)	58 (3.2)	50 (4.2)	47 (4.5)	45 (3.8)
대구 · 경북	149 (8.7)	79 (4.3)	41 (3.4)	52 (5.0)	65 (5.5)
대전 · 충남	98 (5.7)	84 (4.6)	136 (11.4)	81 (7.8)	63 (5.4)
강원	60 (3.5)	137 (7.5)	137 (11.5)	36 (3.5)	51 (4.3)
전북	15 (0.9)	15 (0.8)	4 (0.3)	3 (0.3)	6 (0.5)
광주 · 전남	22 (1.3)	12 (0.7)	14 (1.2)	11 (1.1)	27 (2.3)
충북	65 (3.8)	43 (2.3)	49 (4.1)	51 (4.9)	29 (2.5)
제주	0 (0.0)	6 (0.3)	2 (0.2)	3 (0.3)	0 (0.0)
외국	12 (0.7)	5 (0.3)	5 (0.4)	5 (0.5)	14 (1.2)
불상	57 (3.3)	57 (3.1)	72 (6.1)	49 (4.7)	56 (4.8)

※ ( )는 구성비

그림 3-15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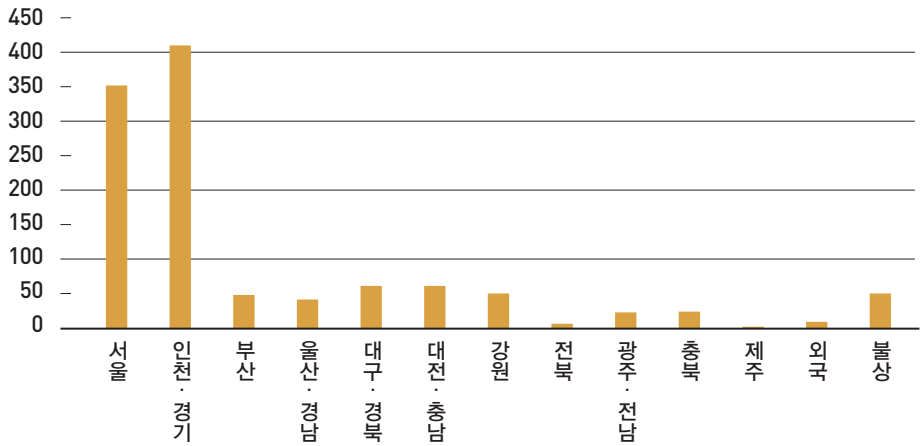

▶ 2013년도 대마사범 점유율은 인천 · 경기지역(35.2%), 서울지역(30.3%), 대구 · 경북지역(5.5%), 대전 · 충남지역(5.4%), 강원지역(4.3%), 충북지역(2.5%) 순으로 나타남

▶ 서울, 대구 · 경북, 강원지역은 증가한 반면, 인천 · 경기지역, 울산 · 경남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9. 직업별 현황

표 3-37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1,875(100)	9,732(100.0)	9,174(100.0)	9,255(100)	9,764(100)
무직	3,551(29.9)	2,992(30.7)	2,978(32.5)	2,885(31.2)	2,693(27.6)
농업	944(7.9)	701(7.2)	369(4.0)	245(2.6)	288(2.9)
도소매업	330(2.8)	237(2.4)	170(1.9)	150(1.6)	77(0.8)
유흥업	131(1.1)	214(2.2)	234(2.6)	171(1.8)	75(0.8)
서비스업	355(3.0)	221(2.3)	269(2.9)	198(2.1)	127(1.3)
금융/증권	35(0.3)	12(0.1)	4(0.0)	6(0.1)	17(0.2)
부동산업	28(0.2)	51(0.5)	32(0.3)	45(0.5)	23(0.2)
노동	468(3.9)	429(4.4)	347(3.8)	287(3.1)	270(2.8)
회사원	1,160(9.8)	437(4.5)	115(1.3)	78(0.8)	335(3.4)
공업	651(5.5)	593(6.1)	79(0.9)	73(0.8)	68(0.7)
건설	111(0.9)	93(1.0)	101(1.1)	75(0.8)	52(0.5)
의료	223(1.9)	130(1.3)	143(1.6)	94(1.0)	114(1.2)
운송업	122(1.0)	137(1.4)	156(1.7)	122(1.3)	87(0.9)
가사	185(1.6)	92(0.9)	117(1.3)	99(1.1)	106(1.1)
예술/연예	43(0.4)	42(0.4)	33(0.4)	19(0.2)	17(0.2)
어업	74(0.6)	63(0.6)	41(0.4)	28(0.3)	40(0.4)
학생	203(1.7)	113(1.2)	92(1.0)	48(0.5)	83(0.9)
직업미상	1,399(11.8)	1,238(12.7)	779(8.5)	711(7.7)	1,025(10.5)
기타	1,862(15.7)	1,937(19.9)	3,115(34.0)	3,921(42.4)	4,267(43.7)

※ ( )는 구성비

▶ 2013년도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27.6%),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업별 변동 추이를 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회사원, 금융 · 증권, 학생, 어업, 의료업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직업군은 감소함

▶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업군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이유는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의 대폭적인 증가(2009년 578명, 2010년 419명)에 따른 것임

▶ 마약사범은 농업, 무직, 가사, 의료, 서비스, 노동 순으로, 향정사범은 무직, 회사원, 노동, 의료, 서비스, 도소매업 순으로, 대마사범은 무직, 회사원, 농업, 학생, 노동 순의 점유율을 보임

그림 3-16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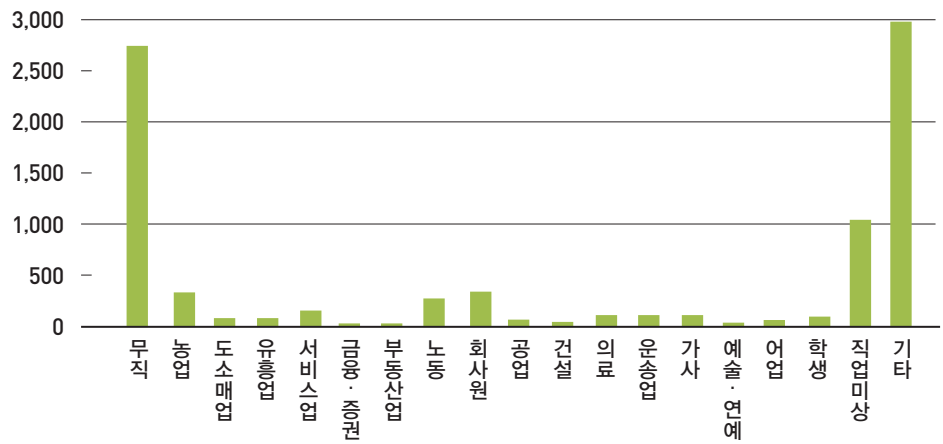

표 3-38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198	1,124	759	582	685
무직	764	238	174	183	191
농업	780	593	243	154	200
도소매업	19	3	6	4	5
유흥업	5	0	4	1	2
서비스업	44	20	24	20	5
금융/증권	1	1	0	0	1
부동산업	2	0	1	2	2
노동	51	18	19	18	11
회사원	70	17	3	2	15
공업	15	3	6	2	2
건설	9	2	1	1	1
의료	61	44	28	17	12
운송업	24	8	4	5	2
가사	139	44	51	45	32
예술/연예	1	0	0	0	0
어업	11	8	8	2	6
학생	1	1	0	0	0
직업미상	69	23	16	4	25
기타	132	101	171	122	173

그림 3-17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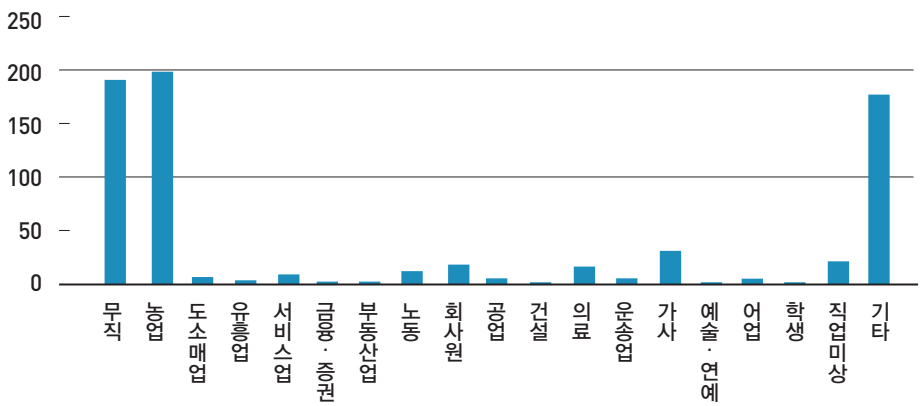

표 3-39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7,965	6,754	7,226	7,631	7,902
무직	2,462	2,372	2,562	2,493	2,293
농업	49	54	65	43	41
도소매업	260	186	143	122	70
유흥업	112	175	193	161	64
서비스업	249	154	199	148	100
금융/증권	33	11	4	6	14
부동산업	21	38	20	41	21
노동	309	283	261	216	223
회사원	897	290	97	68	253
공업	441	341	42	49	58
건설	85	72	78	62	48
의료	160	86	115	76	101
운송업	72	97	112	91	68
가사	34	43	56	51	73
예술/연예	21	4	7	9	8
어업	20	22	26	19	26
학생	149	66	61	28	44
직업미상	1,156	1,070	660	640	883
기타	1,435	1,390	2,525	3,308	3,514

그림 3-18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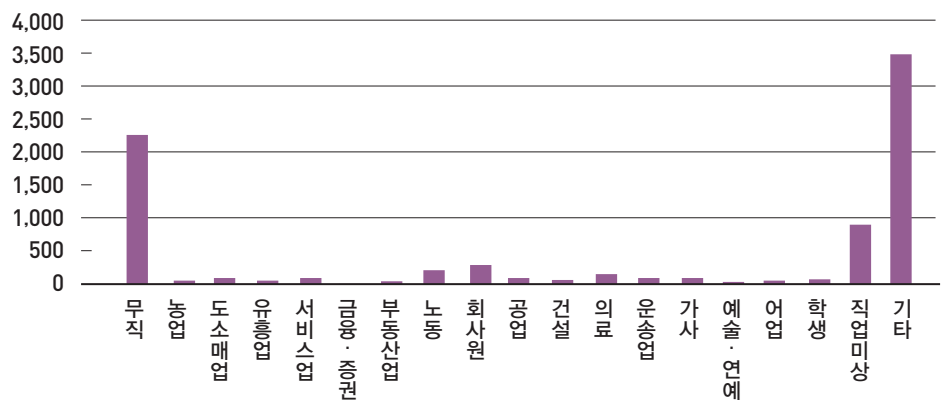

표 3-40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712	1,837	1,189	1,042	1,177
무직	325	375	242	209	209
농업	115	54	61	48	47
도소매업	51	48	21	24	2
유흥업	14	39	37	9	9
서비스업	62	47	46	30	22
금융/증권	1	0	0	0	2
부동산업	5	13	11	2	0
노동	108	127	67	53	36
회사원	193	129	15	8	67
공업	195	249	31	22	8
건설	17	18	22	12	3
의료	2	0	0	1	1
운송업	26	31	40	26	17
가사	12	5	10	3	1
예술/연예	21	38	26	10	9
어업	43	33	7	7	8
학생	53	46	31	20	39
직업미상	174	144	103	67	117
기타	295	441	419	491	580

그림 3-19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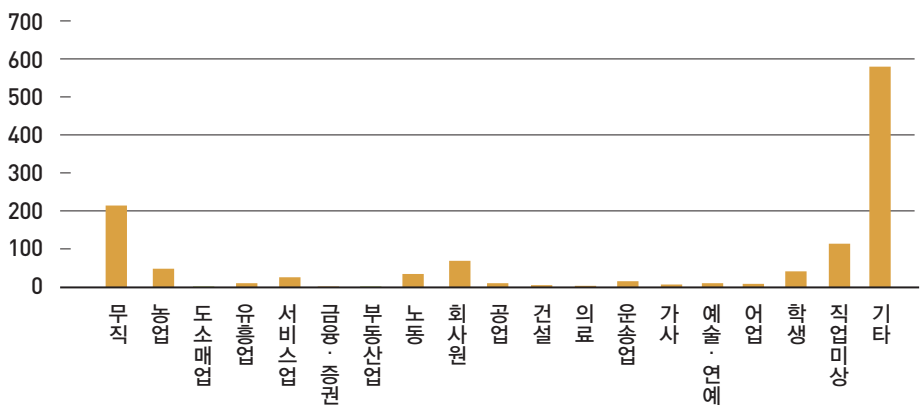

10. 연령별 현황

표 3-41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58 (0.6)	1,010 (10.3)	2,500 (25.6)	3,539 (36.2)	1,833 (18.8)	642 (6.6)	182 (1.9)	9,764 (100)
마약	2 (0.3)	23 (3.4)	52 (7.6)	66 (9.6)	118 (17.2)	393 (57.4)	31 (4.5)	685 (100)
향정	39 (0.5)	674 (8.5)	2,154 (27.3)	3,202 (40.5)	1,531 (19.4)	181 (2.3)	121 (1.5)	7,902 (100)
대마	17 (1.4)	313 (26.6)	294 (25.0)	271 (23.0)	184 (15.6)	68 (5.8)	30 (2.5)	1,177 (100)

그림 3-20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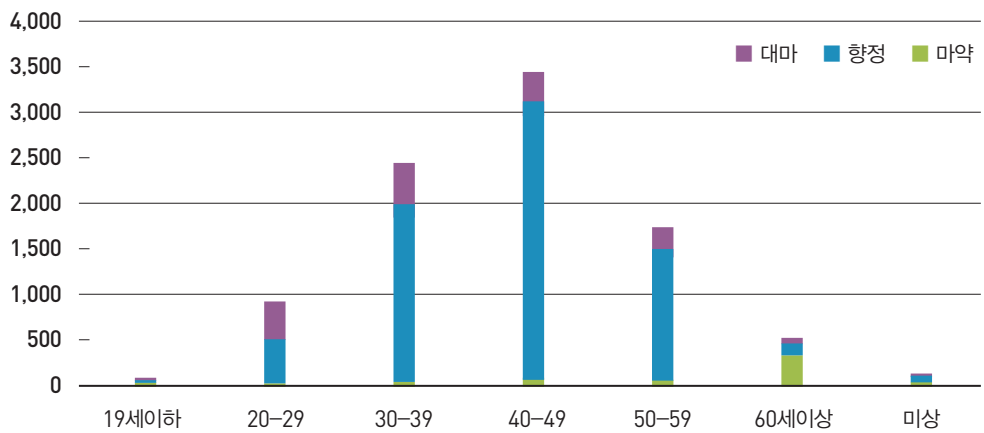

▶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생산 · 근로 계층인 20~40대가 72.1%(전년도 73.1%)를 차지하여 청 · 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15세 미만자의 적발사례는 거의 없지만 검찰 및 유관기관의 청소년 상대 마약퇴치류 홍보 및 계몽 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표 3-42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9	82 (0.7)	1,608 (13.5)	3,371 (28.4)	3,297 (27.8)	1,502 (12.6)	1,643 (13.8)	372 (3.1)	11,875 (100)
2010	35 (0.4)	1,111 (11.4)	2,924 (30.0)	3,185 (32.7)	1,427 (14.7)	752 (7.7)	298 (3.1)	9,732 (100)
2011	41 (0.4)	750 (8.2)	2,552 (27.8)	3,392 (37.0)	1,523 (16.6)	693 (7.6)	223 (2.4)	9,174 (100)
2012	38 (0.4)	758 (8.2)	2,493 (26.9)	3,516 (38.0)	1,717 (18.6)	566 (6.1)	167 (1.8)	9,255 (100)
2013	58 (0.6)	1010 (10.3)	2500 (25.6)	3539 (36.2)	1833 (18.8)	642 (6.6)	182 (1.9)	9,764 (100)

그림 3-21 연도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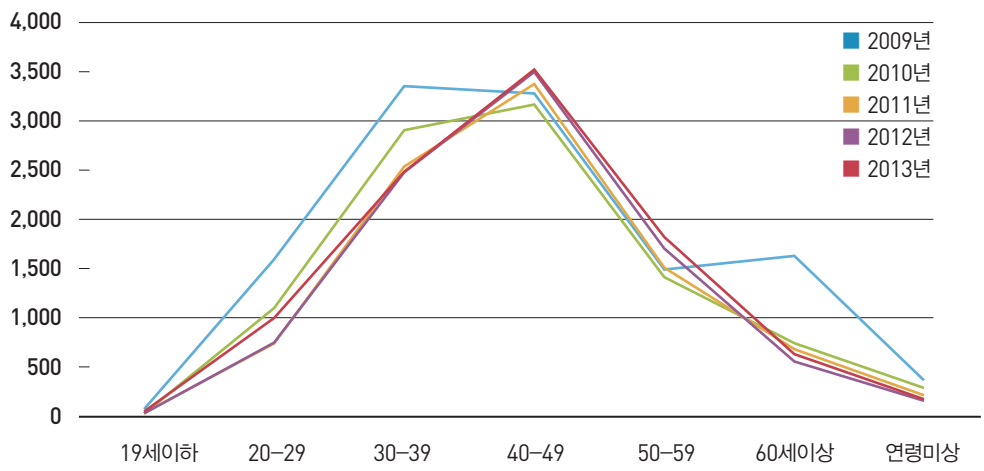

▶ 2013년도 적발된 마약사범은 685명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마약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역시 60대 이상으로 그 주요 원인은 농 · 어촌 지역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어민 고령층에 따른 것으로, 마약사범의 50대 이상 점유율은 74.6%에 달함

표 3-43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9	2 (0.1)	41 (1.9)	79 (3.6)	243 (11.1)	449 (20.4)	1,357 (61.7)	27 (1.2)	2,198 (100)
2010	0 (0.0)	25 (2.2)	57 (5.1)	133 (11.8)	327 (29.1)	567 (50.4)	15 (1.3)	1,124 (100)
2011	0 (0.0)	14 (1.8)	37 (4.9)	82 (10.8)	169 (22.3)	433 (57.0)	24 (3.2)	759 (100)
2012	0 (0.0)	19 (3.3)	20 (3.4)	69 (11.9)	138 (23.7)	330 (56.7)	6 (1.0)	582 (100)
2013	2 (0.3)	23 (3.4)	52 (7.6)	66 (9.6)	118 (17.2)	393 (57.4)	31 (4.5)	685 (100)

그림 3-22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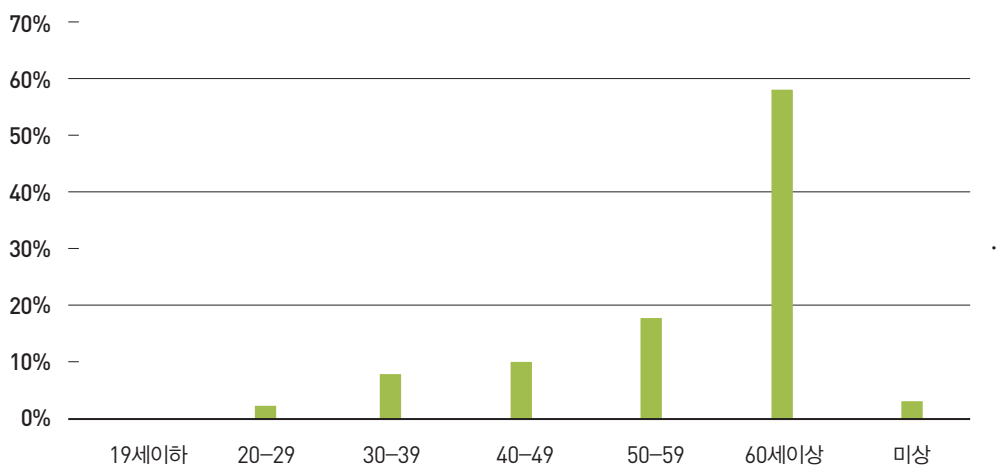

▶ 2013년도에는 향정사범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가운데 20~40대의 구성비가 76.3%로 대다수를 차지

표 3-44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9	55 (0.7)	1,257 (15.8)	2,767 (34.7)	2,610 (32.8)	836 (10.5)	138 (1.7)	302 (3.8)	7,965 (100)
2010	16 (0.2)	666 (9.8)	2,283 (33.7)	2,555 (37.7)	886 (13.1)	126 (1.9)	239 (3.5)	6,771 (100)
2011	34 (0.5)	554 (7.7)	2,185 (30.2)	2,957 (40.9)	1,146 (15.9)	190 (2.6)	160 (2.2)	7,226 (100)
2012	26 (0.3)	570 (7.5)	2,201 (28.8)	3,152 (41.3)	1,377 (18.0)	170 (2.2)	135 (1.8)	7,631 (100)
2013	39 (0.5)	674 (8.5)	2,154 (27.3)	3,202 (40.5)	1,531 (19.4)	181 (2.3)	121 (1.5)	7,902 (100)

그림 3-23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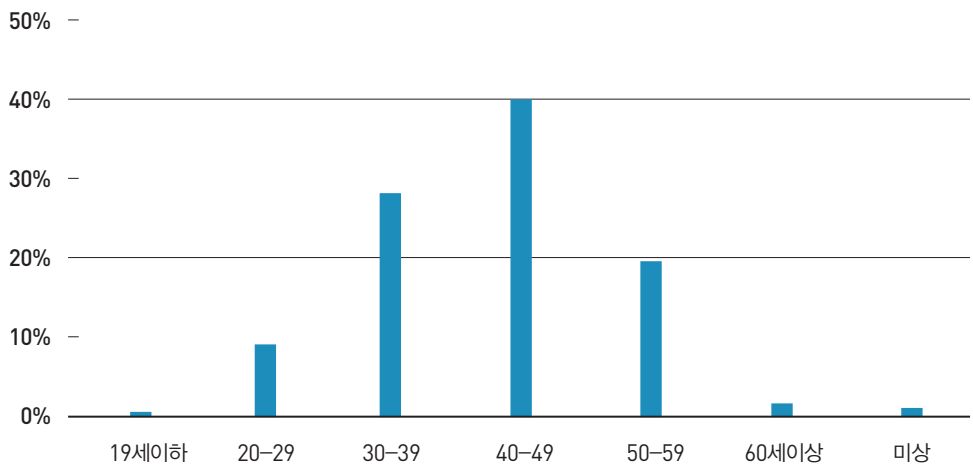

▶ 2013년도 대마사범은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20~40대의 구성비가 74.6%로 대다수를 차지

표 3-45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9	25 (1.5)	310 (18.1)	525 (30.7)	444 (25.9)	217 (12.7)	148 (8.6)	43 (2.5)	1,712 (100)
2010	19 (1.0)	420 (22.9)	584 (31.8)	497 (27.1)	214 (11.6)	59 (3.2)	44 (2.4)	1,837 (100)
2011	7 (0.6)	182 (15.3)	330 (27.8)	353 (29.7)	208 (17.5)	70 (5.9)	39 (3.3)	1,189 (100)
2012	12 (1.2)	169 (16.2)	272 (26.1)	295 (28.3)	202 (19.4)	66 (6.3)	26 (2.5)	1,042 (100)
2013	17 (1.4)	313 (26.6)	294 (25.0)	271 (23.0)	184 (15.6)	68 (5.8)	30 (2.5)	1,177 (100)

그림 3-24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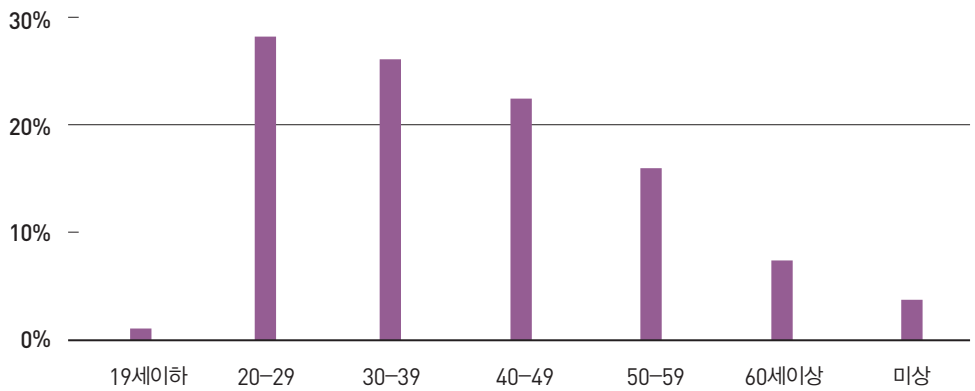

11. 성별 현황

▶ 전체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14.4%로 전년대비 0.3% 증가, 인원은 1,407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

▶ 최근 5년간 성별 점유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 점유율은 84% 정도이고, 여성 점유율은 16% 정도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대1임을 알 수 있음

표 3-46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9	923 (42.0)	1,275 (58.0)	6,626 (83.2)	1,339 (16.8)	1,536 (89.7)	176 (10.3)	9,085 (76.5)	2,790 (23.5)
2010	720 (64.1)	404 (35.9)	5,900 (87.1)	871 (12.9)	1,717 (93.5)	120 (6.5)	8,337 (85.7)	1,395 (14.3)
2011	388 (51.1)	371 (48.9)	6,294 (87.1)	932 (12.9)	1,102 (92.7)	87 (7.3)	7,784 (84.8)	1,390 (15.2)
2012	285 (49.0)	297 (51.0)	6,721 (88.1)	910 (11.9)	940 (90.2)	102 (9.8)	7,946 (85.9)	1,309 (14.1)
2013	350 (51.1)	335 (48.9)	6,951 (88.0)	951 (12.0)	1,056 (89.7)	121 (10.3)	8,357 (85.6)	1,407 (14.4)

그림 3-25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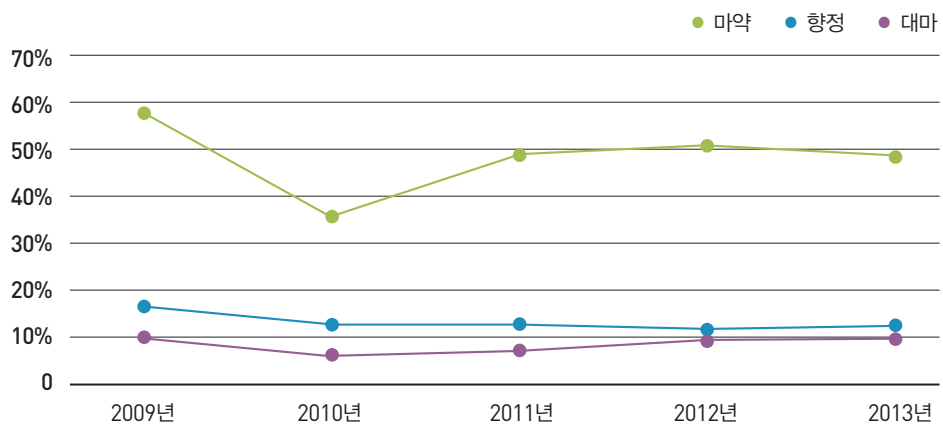

표 3-47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단위 : 명)

직업별 \ 성별	남	여
합계	8,357(85.6)	1,407(14.4)
무직	2,255(83.7)	438(16.3)
농업	165(57.3)	123(42.7)
도소매업	73(94.8)	4(5.2)
유흥업	36(48.0)	39(52.0)
서비스업	95(74.8)	32(25.2)
금융/증권	15(88.2)	2(11.8)
부동산업	18(78.3)	5(21.7)
노동	265(98.1)	5(1.9)
회사원	290(86.6)	45(13.4)
공업	62(91.2)	6(8.8)
건설	52(100.0)	0(0.0)
의료	77(67.5)	37(32.5)
운송업	87(100.0)	0(0.0)
가사	0(0.0)	106(100.0)
예술/연예	15(88.2)	2(11.8)
어업	40(100.0)	0(0.0)
학생	60(72.3)	23(27.7)
직업미상	940(91.7)	85(8.3)
기타	3,812(89.3)	455(10.7)

그림 3-26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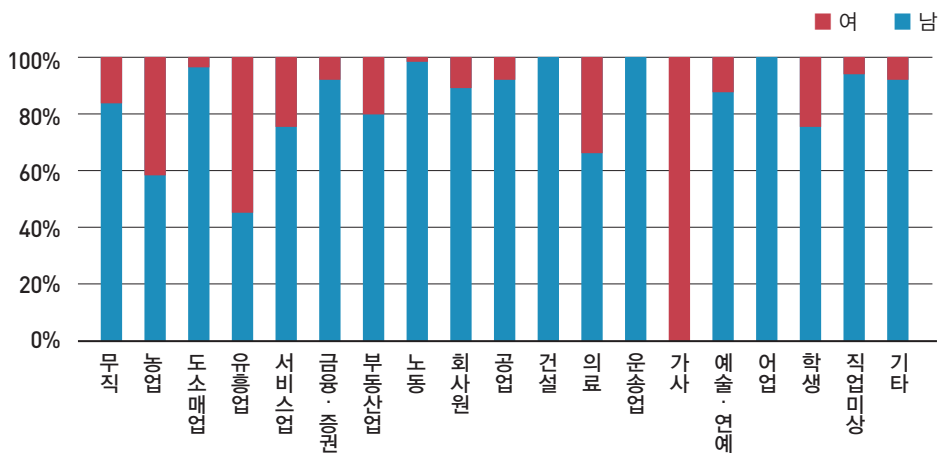

12. 학력별 현황

▶ 전체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이하 저학력층이 57.4%(전년도 62.7%)로 다수 차지

▶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무학자(16.7%)와 초졸(24.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고졸과 중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48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

학력별 / 마약류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16.7	24.0	9.4	13.1	1.4	7.5	1.1	26.8	100
향정	0.9	3.4	18.3	36.1	3.4	9.6	0.9	27.5	100
대마	2.4	5.7	8.4	28.9	5.1	23.8	0.7	24.9	100
합계	2.2	5.2	16.5	33.5	3.5	11.1	0.9	27.1	100

그림 3-27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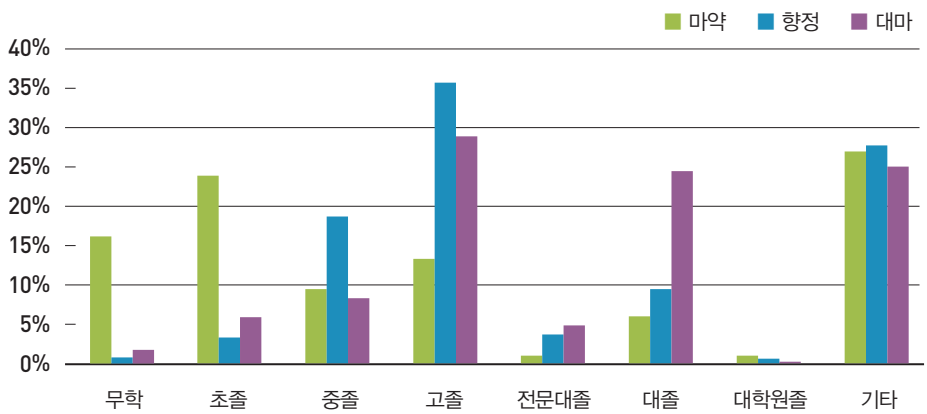

13. 범죄원인별 현황

▶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4.8%), 유혹(15.3%), 영리(10.3%), 호기심(9.9%), 우연(3.4%) 순으로 유혹과 우연, 호기심이 28.6%를 차지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영리목적 마약류범죄는 향정사범이 12.1%를 차지하여 다른 마약류사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작년(10.3%)과 비슷한 수준인 10.1%를 나타내고 있음

표 3-49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

원인별 / 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5.8	11.9	0.1	7.9	11.0	2.1	3.2	57.9	100.0
향정	15.7	2.6	0.1	26.7	8.7	12.1	2.4	31.6	100.0
대마	19.3	3.8	0.1	22.3	17.0	2.7	1.7	33.1	100.0
합계	15.3	3.4	0.1	24.8	9.9	10.3	2.4	33.8	100.0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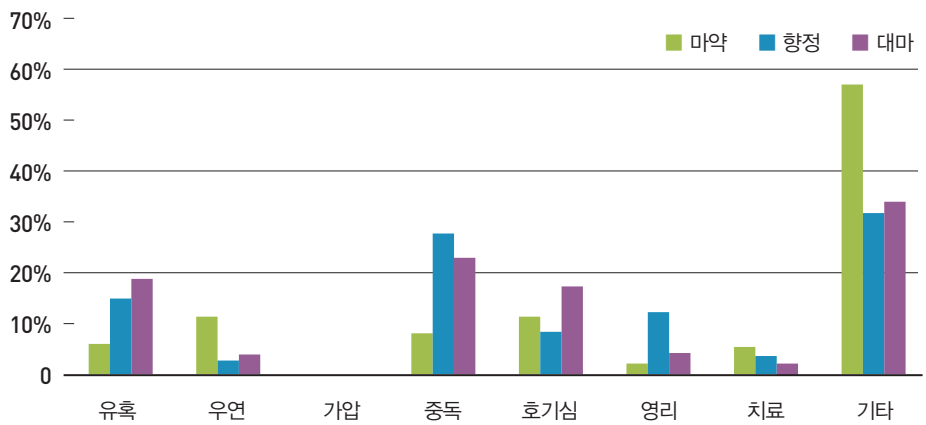

14. 범행 장소별 현황

표 3-50 마약류사범 범행장소별 구성비 (단위 : %)

마약류 / 범행장소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33.1	18.5	25.4	20.4
강변	0.0	0.1	0.3	0.1
공장	0.0	0.0	0.3	0.1
공항	0.8	1.6	2.3	1.6
기타	19.9	24.0	24.8	23.8
노상	2.6	20.1	16.1	18.4
농가 및 축사	21.9	0.1	1.5	1.9
농경지	11.3	0.1	1.5	1.1
부두	0.0	0.2	0.2	0.2
불명	1.5	2.8	2.2	2.6
사무실	3.3	4.7	2.9	4.4
상가	0.8	2.6	1.2	2.3
선박	0.0	0.2	0.4	0.2
숙박업소	2.9	14.5	3.7	12.3
야산	0.3	0.2	1.3	0.3
유흥업소	0.4	2.4	4.8	2.6
자동차	1.0	7.4	10.7	7.3
항공기	0.1	0.4	0.4	0.4
해변가	0.0	0.0	0.3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범행 장소는 가정집(20.4%), 노상(18.4%), 숙박업소(12.3%), 자동차(7.3%)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약류사범 특성상 특별한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다양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 마약류별로는

- 마약사범의 경우는 가정집, 농가 · 축사가 55%(전년도 51.3%)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종을 이루는데서 기인함

- 향정사범의 사용 장소는 주로 노상, 숙박업소, 가정집, 자동차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를 이용하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이 큰 점유율을 차지

- 대마사범은 가정집, 노상, 자동차, 숙박업소가 55.9%(전년도 6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의 용이성 때문임

그림 3-29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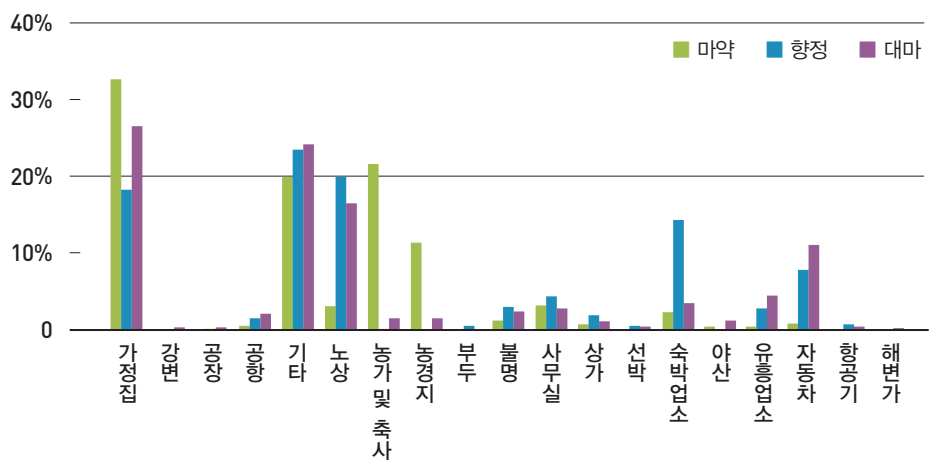

15. 검찰처리 현황

표 3-51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9	12,380 (100)	4,175 (33.7)	767 (6.2)	3,550 (28.7)	720 (5.8)	851 (6.9)	1 (0.0)	1,157 (9.3)	448 (3.6)	711 (5.7)
2010	10,473 (100)	3,954 (37.8)	396 (3.8)	2,123 (20.3)	752 (7.2)	1,050 (10.0)	1 (0.0)	1,379 (13.2)	317 (3.0)	501 (4.8)
2011	9,595 (100)	4,071 (42.4)	403 (4.2)	1,233 (12.9)	870 (9.1)	868 (9.0)	0 (0.0)	1,228 (12.8)	297 (3.1)	625 (6.5)
2012	9,908 (100)	4,312 (43.5)	260 (2.6)	1,230 (12.4)	1,022 (10.3)	938 (9.5)	0 (0.0)	1,334 (13.5)	238 (2.4)	574 (5.8)
2013	10,371 (100)	4,286 (41.3)	335 (3.2)	1,495 (14.4)	914 (8.8)	945 (9.1)	3 (0.0)	1,723 (16.6)	224 (2.2)	446 (4.3)

그림 3-30 마약류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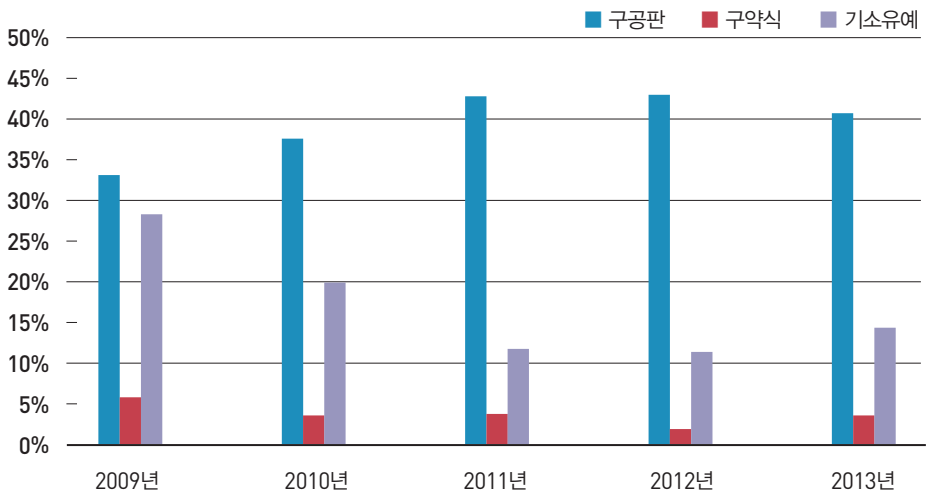

표 3–52 마약사범 처리내역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9	2,197 (100)	58 (2.6)	281 (12.8)	1,718 (78.2)	13 (0.6)	60 (2.7)	0 (0.0)	19 (0.9)	24 (1.1)	24 (1.1)
2010	1,143 (100)	58 (5.1)	113 (9.9)	708 (61.9)	19 (1.7)	24 (2.1)	0 (0.0)	197 (17.2)	6 (0.5)	18 (1.6)
2011	775 (100)	28 (3.6)	99 (12.8)	534 (68.9)	20 (2.6)	32 (4.1)	0 (0.0)	23 (3.0)	19 (2.5)	20 (2.6)
2012	590 (100)	36 (6.1)	55 (9.3)	419 (71.0)	10 (1.7)	38 (6.4)	0 (0.0)	19 (3.2)	3 (0.5)	10 (1.7)
2013	669 (100)	36 (5.4)	70 (10.5)	457 (68.3)	18 (2.7)	36 (5.4)	0 (0.0)	19 (2.8)	19 (2.8)	14 (2.1)

그림 3–31 마약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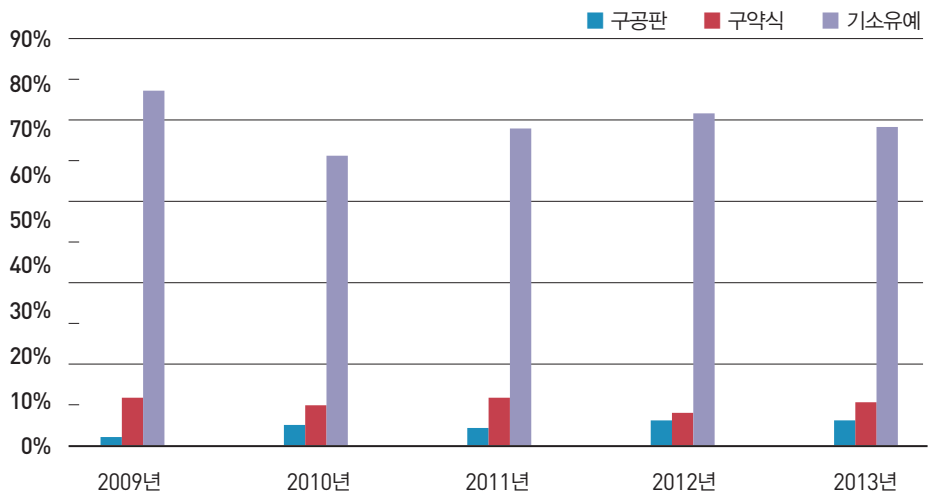

표 3–53 향정사범 처리내역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9	8,398 (100)	3,416 (40.7)	319 (3.8)	1,511 (18.0)	630 (7.5)	705 (8.4)	0 (0.0)	939 (11.2)	386 (4.6)	492 (5.9)
2010	7,320 (100)	3,214 (43.9)	161 (2.2)	806 (11.0)	650 (8.9)	889 (12.1)	1 (0.0)	975 (13.3)	272 (3.7)	352 (4.8)
2011	7,532 (100)	3,517 (46.7)	198 (2.6)	531 (7.0)	757 (10.1)	716 (9.5)	0 (0.0)	1,063 (14.1)	239 (3.2)	511 (6.8)
2012	8,208 (100)	3,789 (46.2)	147 (1.8)	635 (7.7)	938 (11.4)	813 (9.9)	0 (0.0)	1,161 (14.1)	207 (2.5)	518 (6.3)
2013	8,495 (100)	3,745 (44.1)	210 (2.5)	857 (10.1)	812 (9.6)	807 (9.5)	2 (0.0)	1,518 (17.9)	172 (2.0)	372 (4.4)

그림 3–32 향정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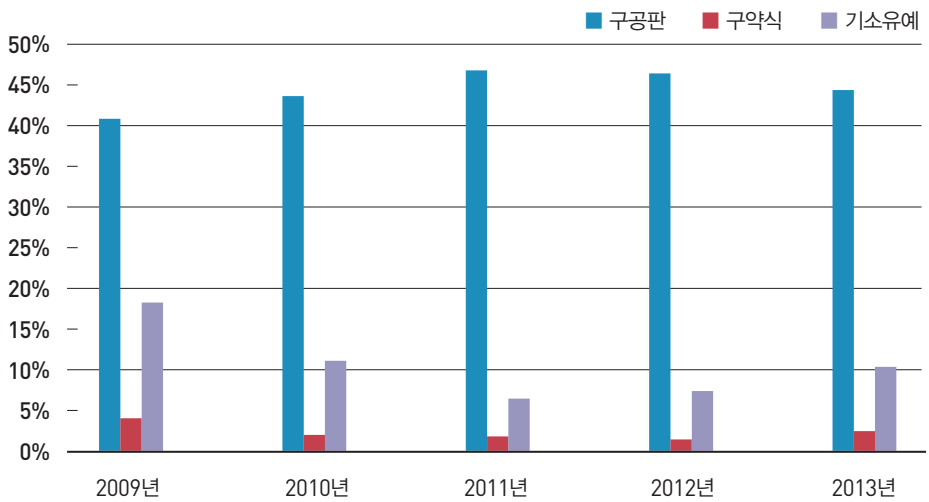

표 3–54 대마사범 처리내역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09	1,785 (100)	701 (39.3)	167 (9.4)	321 (18.0)	77 (4.3)	86 (4.8)	1 (0.1)	199 (11.1)	38 (2.1)	195 (10.9)
2010	2,010 (100)	682 (33.9)	122 (6.1)	609 (30.3)	83 (4.1)	137 (6.8)	0 (0.0)	207 (10.3)	39 (1.9)	131 (6.5)
2011	1,288 (100)	526 (40.8)	106 (8.2)	168 (13.0)	93 (7.2)	120 (9.3)	0 (0.0)	142 (11.0)	39 (3.0)	94 (7.3)
2012	1,110 (100)	487 (43.9)	58 (5.2)	176 (15.9)	74 (6.7)	87 (7.8)	0 (0.0)	154 (13.9)	28 (2.5)	46 (4.1)
2013	1,207 (100)	505 (41.8)	55 (4.6)	181 (15.0)	84 (7.0)	102 (8.5)	1 (0.1)	186 (15.4)	33 (2.7)	60 (5.0)

그림 3–33 대마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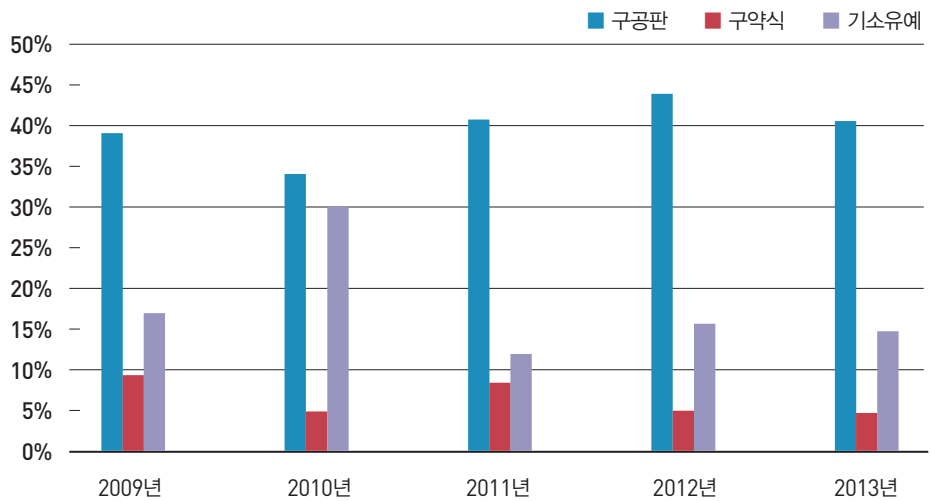

▶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41.3%이나 일반 형사사범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범죄의 중대성 및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높은데 기인(일반 형사사범 : 7.6%)

▶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3.2%로 전년대비 0.6% 증가함(일반 형사사범 : 30.5%)

▶ 한편, 기소유예율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4.4%로 나타남(일반 형사사범 : 14.2%)

▶ 2013년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대마사범이 41.8%, 향정사범이 44.1%인데 반해 마약사범은 5.4%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68.3%)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임

▶ 2013년도 기소중지율의 경우 대마사범이 7.0%, 향정사범이 9.6%로 마약사범의 2.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마, 향정사범의 경우 주거부정의 무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16. 마약류사범 1심재판 결과

표 3-55 마약류별 1심재판 결과 (단위 : 명)

구분 \ 재판결과		합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합계	2011	3,304 (100)	184 (5.6)	1,138 (34.4)	435 (13.2)	1,033 (31.3)	331 (10.0)	25 (0.8)	34 (1.0)	0 (0.0)	124 (3.8)
	2012	3,239 (100)	133 (4.1)	1,123 (34.7)	557 (17.2)	1,163 (35.9)	107 (3.3)	7 (0.2)	1 (0.0)	0 (0.0)	148 (4.6)
	2013	3,357 (1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0 (0.0)	120 (3.6)
마약	2011	48 (100)	23 (47.9)	16 (33.3)	0 (0.0)	1 (2.1)	0 (0.0)	0 (0.0)	1 (2.1)	0 (0.0)	7 (14.6)
	2012	40 (100)	10 (25.0)	19 (47.5)	0 (0.0)	4 (10.0)	5 (12.5)	0 (0.0)	0 (0.0)	0 (0.0)	2 (5.0)
	2013	30 (100)	6 (20.0)	13 (43.3)	0 (0.0)	4 (13.3)	3 (10.0)	0 (0.0)	1 (3.3)	0 (0.0)	3 (10.0)
향정	2011	2,754 (100)	102 (3.7)	810 (29.4)	385 (14.0)	973 (35.3)	319 (11.6)	25 (0.9)	33 (1.2)	0 (0.0)	107 (3.9)
	2012	2,806 (100)	92 (3.3)	822 (29.3)	511 (18.2)	1,133 (40.4)	100 (3.6)	7 (0.2)	1 (0.0)	0 (0.0)	140 (5.0)
	2013	2,910 (100)	110 (3.8)	934 (32.1)	499 (17.1)	1,149 (39.5)	103 (3.5)	6 (0.2)	2 (0.1)	0 (0.0)	107 (3.7)
대마	2011	502 (100)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2012	393 (100)	31 (7.9)	282 (71.8)	46 (11.7)	26 (6.6)	2 (0.5)	0 (0.0)	0 (0.0)	0 (0.0)	6 (1.5)
	2013	417 (100)	44 (10.6)	291 (69.8)	25 (6.0)	45 (10.8)	2 (0.5)	0 (0.0)	0 (0.0)	0 (0.0)	10 (2.4)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2013년도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54.8%), 집행유예(36.9%), 벌금(4.8%) 순으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점유율에 비해 높은 것은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3-56 마약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9	31 (35.6)	26 (29.9)	1 (1.1)	9 (10.3)	11 (12.6)	0 (0.0)	0 (0.0)	0 (0.0)	9 (10.3)
2010	13 (17.3)	42 (56.0)	2 (2.7)	5 (6.7)	4 (5.3)	0 (0.0)	0 (0.0)	0 (0.0)	9 (12.0)
2011	23 (47.9)	16 (33.3)	0 (0.0)	1 (2.1)	0 (0.0)	0 (0.0)	1 (2.1)	0 (0.0)	7 (14.6)
2012	10 (25.0)	19 (47.5)	0 (0.0)	4 (10.0)	5 (12.5)	0 (0.0)	0 (0.0)	0 (0.0)	2 (5.0)
2013	6 (20.0)	13 (43.3)	0 (0.0)	4 (13.3)	3 (10.0)	0 (0.0)	1 (3.3)	0 (0.0)	3 (10.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4 마약사범 연도별 1심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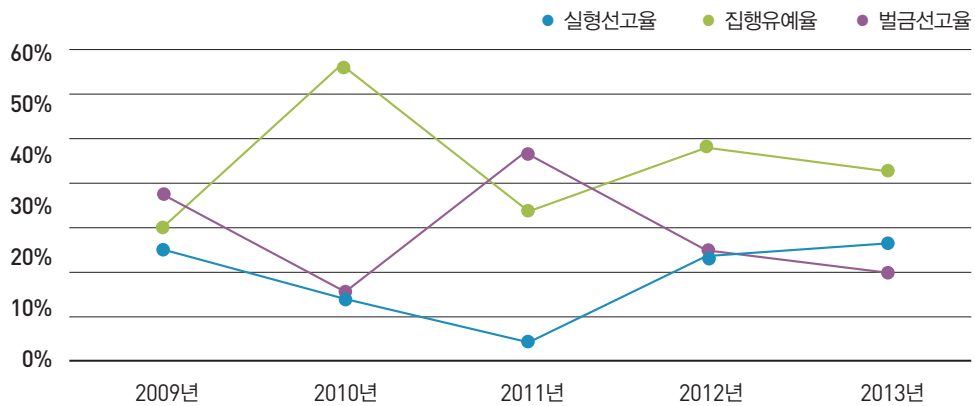

표 3–57 향정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9	160 (5.1)	966 (30.7)	669 (21.3)	1,145 (36.4)	99 (3.1)	7 (0.2)	0 (0.0)	0 (0.0)	97 (3.1)
2010	157 (4.9)	903 (28.4)	597 (18.8)	1,280 (40.2)	104 (3.3)	3 (0.1)	5 (0.2)	0 (0.0)	134 (4.2)
2011	102 (3.7)	810 (29.4)	385 (14.0)	973 (35.3)	319 (11.6)	25 (0.9)	33 (1.2)	0 (0.0)	107 (3.9)
2012	92 (3.3)	822 (29.3)	511 (18.2)	1,133 (40.4)	100 (3.6)	7 (0.2)	1 (0.0)	0 (0.0)	140 (5.0)
2013	110 (3.8)	934 (32.1)	499 (17.1)	1,149 (39.5)	103 (3.5)	6 (0.2)	2 (0.1)	0 (0.0)	107 (3.7)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5 향정사범 연도별 1심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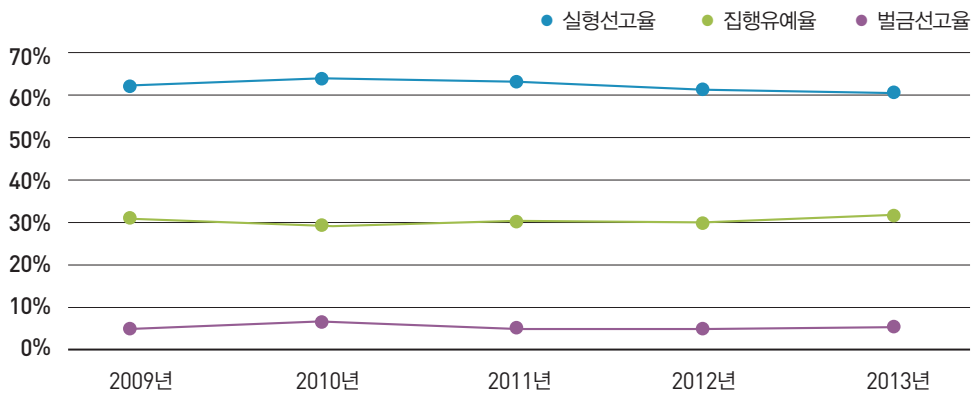

표 3-58 대마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9	59 (9.6)	372 (60.6)	126 (20.5)	39 (6.4)	4 (0.7)	0 (0.0)	0 (0.0)	0 (0.0)	14 (2.3)
2010	71 (10.5)	422 (62.6)	113 (16.8)	53 (7.9)	1 (0.1)	0 (0.0)	0 (0.0)	0 (0.0)	14 (2.1)
2011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2012	31 (7.9)	282 (71.8)	46 (11.7)	26 (6.6)	2 (0.5)	0 (0.0)	0 (0.0)	0 (0.0)	6 (1.5)
2013	44 (10.6)	291 (69.8)	25 (6.0)	45 (10.8)	2 (0.5)	0 (0.0)	0 (0.0)	0 (0.0)	10 (2.4)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6 대마사범 연도별 1심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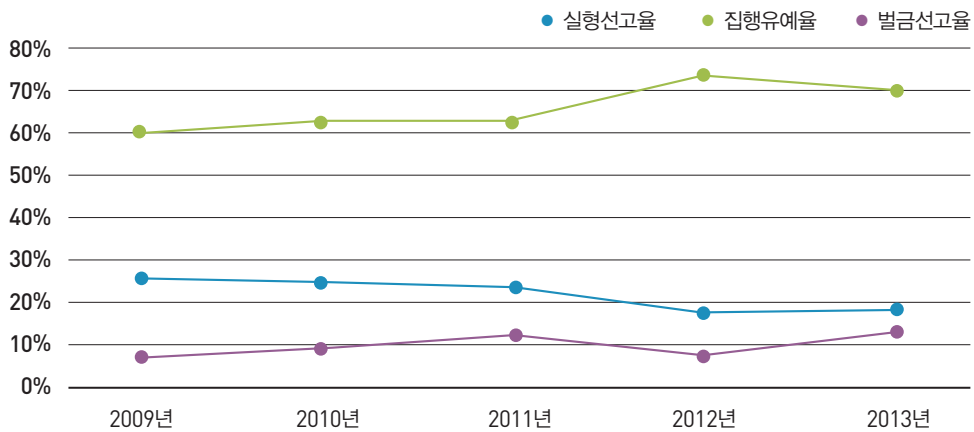

17.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59 마약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9	32 (33.7)	29 (30.5)	9 (9.5)	25 (26.3)	79 (100)
2010	9 (12.0)	46 (61.3)	3 (4.0)	17 (22.7)	75 (100)
2011	14 (23.0)	24 (39.3)	5 (8.2)	18 (29.5)	61 (100)
2012	23 (41.8)	22 (40.0)	2 (3.6)	8 (14.5)	55 (100)
2013	26 (44.1)	24 (40.7)	2 (3.4)	7 (11.9)	5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표 3-60 향정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9	2,056 (64.1)	965 (30.1)	1 (0.0)	187 (5.8)	3,209 (100)
2010	1,886 (63.7)	870 (29.4)	0 (0.0)	203 (6.9)	2,959 (100)
2011	1,555 (62.7)	774 (31.2)	1 (0.0)	149 (6.0)	2,479 (100)
2012	1,718 (62.6)	879 (32.0)	0 (0.0)	147 (5.4)	2,744 (100)
2013	1,537 (61.1)	840 (33.4)	0 (0.0)	138 (5.5)	2,51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표 3-61 대마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9	305 (34.4)	504 (56.9)	2 (0.2)	75 (8.5)	886 (100)
2010	286 (35.6)	457 (56.9)	1 (0.1)	59 (7.3)	803 (100)
2011	169 (31.5)	320 (59.7)	0 (0.0)	47 (8.8)	536 (100)
2012	206 (36.0)	328 (57.2)	0 (0.0)	39 (6.8)	573 (100)
2013	194 (35.3)	321 (58.5)	0 (0.0)	34 (6.2)	54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7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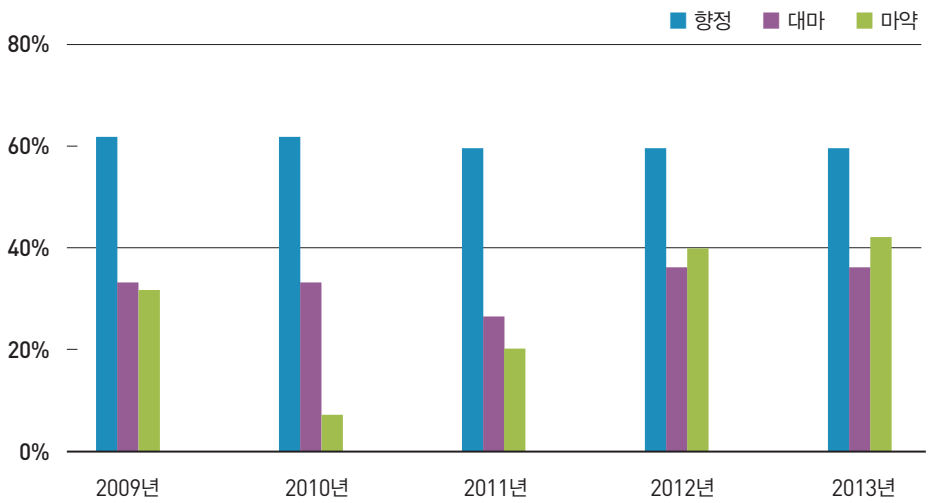

18.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62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09	0 (0.0)	70 (24.5)	79 (27.6)	100 (35.0)	37 (12.9)	805,594
2010	0 (0.0)	25 (21.6)	33 (28.4)	37 (31.9)	21 (18.1)	1,018,966
2011	0 (0.0)	16 (19.3)	18 (21.7)	31 (37.3)	18 (21.7)	1,153,012
2012	0 (0.0)	6 (10.9)	11 (20.0)	23 (41.8)	15 (27.3)	1,490,909
2013	0 (0.0)	7 (10.0)	21 (30.0)	19 (27.1)	23 (32.9)	1,604,286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 )는 분포비율

표 3-63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09	0 (0.0)	7 (2.4)	6 (2.1)	53 (18.0)	229 (77.6)	2,663,918
2010	0 (0.0)	2 (1.5)	4 (2.9)	28 (20.6)	102 (75.0)	3,169,853
2011	0 (0.0)	3 (1.7)	2 (1.1)	24 (13.4)	150 (83.8)	3,599,441
2012	0 (0.0)	1 (0.8)	4 (3.3)	24 (19.7)	93 (76.2)	3,422,131
2013	0 (0.0)	2 (1.1)	10 (5.5)	27 (14.8)	144 (78.7)	3,614,754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 )는 분포비율

표 3-64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 원)
2009	0 (0.0)	5 (2.9)	10 (5.7)	48 (27.4)	112 (64.0)	2,351,429
2010	0 (0.0)	0 (0.0)	4 (3.5)	16 (14.0)	94 (82.5)	3,045,614
2011	0 (0.0)	2 (2.2)	2 (2.2)	7 (7.8)	79 (87.8)	3,158,889
2012	0 (0.0)	0 (0.0)	1 (1.8)	3 (5.2)	53 (93.0)	3,192,982
2013	0 (0.0)	1 (1.7)	2 (3.3)	5 (8.3)	52 (86.7)	3,163,333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 )는 분포비율

그림 3-38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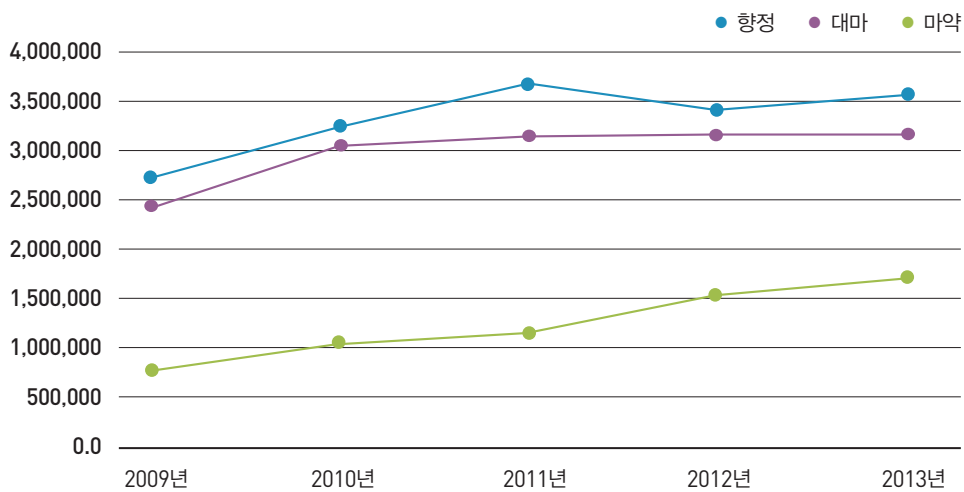

19. 실형자 · 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 2013년도 마약, 향정, 대마 실형형기는 증가하였으나 대마 집행유예 기간은 감소

표 3-65 마약류별 실형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단위 : 월)

구분 / 연도별	마약		향정		대마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09	14.5	26.0	16.0	26.2	41.8	26.1
2010	14.7	26.5	16.9	27.1	25.1	26.9
2011	25.2	26.6	25.8	27.5	35.1	32.5
2012	16.6	26.3	16.6	28.3	25.0	32.2
2013	16.9	28.7	17.1	28.3	26.5	31.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20.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66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9	3 (10.3)	21 (72.4)	5 (17.2)	0	29 (100)
2010	6 (13.0)	28 (60.9)	10 (21.7)	2 (4.4)	46 (100)
2011	1 (4.2)	12 (50.0)	11 (45.8)	0 (0.0)	24 (100)
2012	1 (4.6)	11 (50.0)	8 (36.4)	2 (9.0)	22 (100)
2013	1 (4.2)	11 (45.8)	12 (50.0)	0 (0)	2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표 3-67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9	53 (5.5)	728 (75.4)	174 (18.0)	10 (1.0)	965 (100)
2010	22 (2.5)	636 (73.1)	209 (24.0)	3 (0.3)	870 (100)
2011	9 (1.2)	571 (73.8)	186 (24.0)	8 (1.0)	774 (100)
2012	10 (1.1)	614 (69.9)	243 (27.7)	12 (1.3)	879 (100)
2013	20 (2.4)	573 (68.2)	233 (27.7)	14 (1.7)	84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39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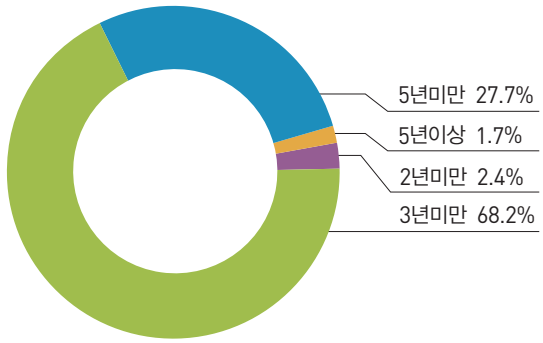

표 3-68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09	26 (5.2)	385 (76.4)	91 (18.1)	2 (0.4)	504 (100)
2010	17 (3.7)	341 (74.6)	97 (21.2)	2 (0.4)	457 (100)
2011	6 (1.9)	247 (77.2)	67 (20.9)	0 (0.0)	320 (100)
2012	13 (4.0)	253 (77.1)	59 (18.0)	3 (0.9)	328 (100)
2013	9 (2.8)	210 (65.4)	94 (29.3)	8 (2.5)	32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21.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69 마약사범의 실형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2009	2 (6.3)	4 (12.5)	8 (25.0)	9 (28.1)	9 (28.1)	32 (100)
2010	2 (22.2)	2 (22.2)	3 (33.3)	1 (11.1)	1 (11.1)	9 (100)
2011	1 (7.1)	7 (50.0)	2 (14.3)	1 (7.1)	3 (21.4)	14 (100)
2012	5 (21.7)	9 (39.1)	4 (17.4)	2 (8.8)	3 (13.0)	23 (100)
2013	1 (3.8)	14 (53.8)	6 (23.1)	2 (7.7)	3 (11.5)	2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표 3-70 향정사범의 실형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2009	684 (33.3)	1,053 (51.2)	180 (8.8)	94 (4.6)	45 (2.2)	2,056 (100)
2010	519 (27.6)	981 (52.2)	236 (12.5)	99 (5.3)	45 (2.4)	1,880 (100)
2011	283 (18.2)	657 (42.3)	282 (18.1)	214 (13.8)	119 (7.7)	1,555 (100)
2012	487 (28.4)	910 (53.0)	198 (11.4)	92 (5.4)	31 (1.8)	1,718 (100)
2013	448 (29.1)	823 (53.5)	159 (10.3)	72 (4.7)	35 (2.3)	1,537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40 향정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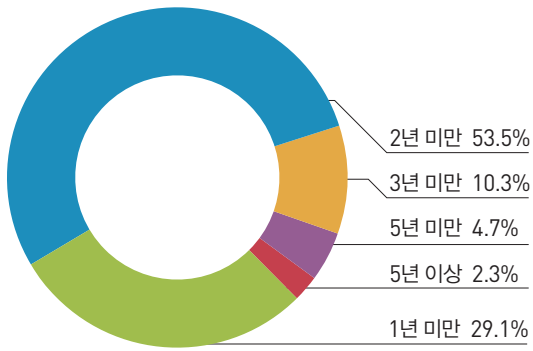

표 3-71 대마사범의 실형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계
2009	169 (55.4)	94 (30.8)	22 (7.2)	16 (5.3)	4 (1.3)	305 (100)
2010	131 (45.8)	120 (42.0)	19 (6.6)	12 (4.2)	4 (1.4)	286 (100)
2011	43 (25.4)	62 (36.7)	28 (16.6)	22 (13.0)	14 (8.3)	169 (100)
2012	43 (25.4)	62 (36.7)	28 (16.6)	22 (13.0)	14 (8.3)	169 (100)
2013	54 (27.8)	104 (53.6)	23 (11.9)	10 (5.2)	3 (1.5)	19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22. 재범현황

표 3-72 연도별 재범률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사범	11,875	9,732	9,174	9,255	9,764
재범인원	4,018	3,583	3,356	3,596	3,868
재범률(%)	33.8	36.8	36.6	38.9	39.6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9.6%로서 매년 30% 이상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음

표 3-73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2,198	7,965	1,712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재범인원	99	3,333	586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재범률(%)	4.5	41.8	34.2	16.2	41.5	32.3	8.2	39.8	35.1	22.5	40.5	36.1	18.5	42.6	32.0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 · 대마 · 마약사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 이후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40%대를 상회하면서 2006년도에는 51.1%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낮아져 2011년도에는 39.8%까지 내려갔으나 2012년도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3년도에는 42.6%로 여전히 향정사범이 다른 마약류사범보다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3-41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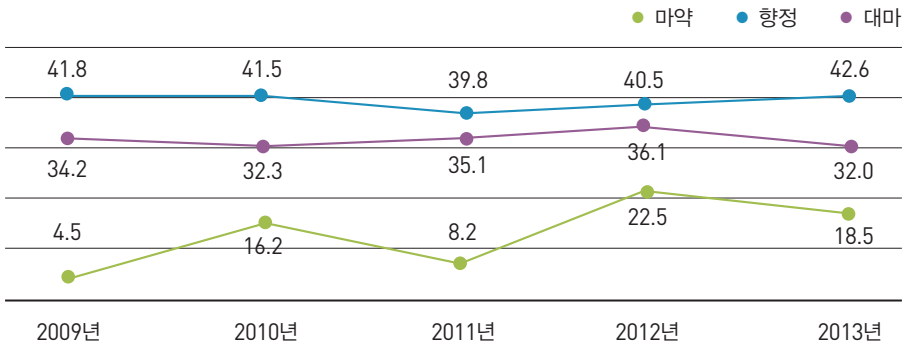

표 3-74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99	3,333	586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동종전과 인원	57	2,786	329	110	2,270	360	26	2,401	283	17	2,543	212	35	2,734	236
이종전과 인원	29	110	95	52	98	94	28	64	45	89	89	57	64	103	53
복합전과 인원	13	437	162	20	440	139	8	412	89	25	457	107	28	528	88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2013년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과 인원이 3,005명으로 30.8%(전년도 30.0%), 이종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전과인원은 220명으로 2.3%(전년도 2.5%), 복합전과인원도 644명으로 6.6%(전년도 6.4%) 차지

2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감호 실적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10]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치료감호[11] : 치료감호법

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2013년도 치료보호인원은 총 65명으로 전년대비 182.6% 증가하였으며, 전체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 등 의뢰자는 11명(전년도 12명)으로 전년대비 8.3% 감소

표 3-75 치료보호실적 (단위 : 명)

연도별 / 마약류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84	231	81	23	65
마약	0	0	0	0	1
향정	277	227	81	23	62
대마	7	4	0	0	2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0] 전국 21개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임

11]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2002년도부터 활용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은 2002년도 8명, 2003년도 22명, 2004년도 20명, 2005년도 73명, 2006년도 91명, 2007년도 102명, 2008년도 208명, 2009년도 135명, 2010년도 74명, 2011년도 87명, 2012년도 131명, 2013년도는 140명

▶ 2013년도 치료감호 현황은 총 36명으로 전년도 21명대비 71.4% 증가

표 3-76 치료감호실적 (단위 : 명)

연도별 / 마약류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3	9	19	21	36
마약	0	0	0	0	0
향정	33	9	18	21	35
대마	0	0	1	0	1

자료 : 치료감호소 입소소계

다.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

▶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병원 현황(21개 병원)

표 3-77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 현황

구분 /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1개 의료기관	321	284	231	81	23	4
서울	국립서울병원	2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5	3	2	
	강남을지병원	2					2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대전	참다남병원	4					
대구	대구의료원	2			1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울산	큰빛병원	12		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3	2	4	2	
	용인정신병원	10	8	11	6	4	
	계요병원	10	7	3	4	5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충북	청주의료원	2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2	1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262	208	61	9	
	양산병원	2					2
전북	군산의료원	1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제주	연강병원	2					

※2개 의료기관인 강남을지병원, 양산병원 : '13. 12월 신규 지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는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 · 재활 교육 실시

24.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발생 현황

가. 개 요

▶ 마약류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 난동, 수사관 살해 등 2차 강력범죄는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마약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강도 등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마약사범을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범죄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 · 경제적 손실 및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나.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표 3-78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유형별 / 연도별	살인		과다투약 사망 · 자살		강 · 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 살해 · 상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9	0	0	0	0	0	0	0	0	0	0	1	1	1	1
2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	1	1	1	1	0	0	1	1	0	0	0	0	0	0
2013	1	1	2	2	0	0	3	3	0	0	3	3	8	8
계	2	2	3	3	0	0	4	4	0	0	4	4	9	9

다. 대표적 사례

살인 사건

▶ 2001. 8. 9. 04:00경 서산시 부석면 소재 야산에서 ○○○(남 30세, 무직), ○○○(남 28세, 무직), ○○○(남 28세, 무직)은 공동으로 피해자 ○○○가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곡괭이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서산지청)

▶ 2001. 9. 2. 09:10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주택에서 ○○○(남 38세, 무직)는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던 내연의 처 ○○○을 칼로 찔러 살해 (서산지청)

▶ 2001. 3. 26. 10:30경 서울 중구 소재 식품점에서 러미나 중독 증세를 보이던 ○○○(남 23세, 공익근무요원)은 러미나 판매상인 피해자 ○○○과 러미나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살해 (서울지검)

▶ 2002. 1. 16. 05: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60의 26 소재 미도○여관 601호실에서 러미나 중독자인 ○○○(남 40세, 무직)이 윤락녀인 피해자 ○○○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 (서울동부지청)

▶ 2004. 11. 18. 19: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호텔 807호실에서 피해자 ○○○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20:00경 위 ○○○와 필로폰 24g에 대한 흥정을 하면서 가격문제로 다투던 중 소유 불상의 잭나이프를 집어 들고 위 ○○○의 배, 가슴 등을 찔러 살해 (부산지검)

▶ 2005. 6. 19. 11: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아파트 피의자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투여한 직후,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그들을 먼저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16층, 10층 등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 ○○○의 어깨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3:30경 노원구 중계동 소재 ○○아파트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하고, 다음날 00:55경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서울북부지검)

▶ 2006. 1. 5. 23:00경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경주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주차한 피의자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 피해자 ○○○이 피의자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동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1시간가량 때리고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서울중앙지검)

▶ 2012. 12. 25. 피해자 ○○○과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필로폰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식칼로 살해 (인천지검)

▶ 2013. 2. 13. 자신의 형인 ○○○가 필로폰에 중독되어 자살을 하자 ○○○에게 필로폰을 알려 준 피해자 ○○○에게 앙심을 품고 ○○○를 찾아가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 (서울중앙지검)

자살 · 과다투약 사망 사건

▶ 2001. 8. 30.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북문장여관에서 ○○○(남 37세, 무직)가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1. 3. 31. 20:00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자택에서 ○○○(남 51세, 무직)가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2. 1. 5. 01: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모텔에 투숙 중이던 ○○○(남 36세, 무직)이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장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2012. 10. 21. 0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모텔에서 ○○○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부산지검)

▶ 2013. 1. 4.경 필로폰 절취, 사용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여 자살 (부산지검)

▶ 2013. 4. 2.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의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가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 (부천지청)

강 · 절도 사건

▶ 2001. 5. 27. ○○○(남 27세, 무직), ○○○(남 28세, 무직)는 공동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전남대학병원에서 마약인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페치딘 10앰플을 절취하고, 2002. 2. 2. ○○○(남 27세, 무직), ○○○(남 28세, 무직)은 공동하여 마산의료원에서 모르핀 108앰플, 펜타닐 19앰플, 페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2001. 7.~12.경 사이 안산시 고잔동 소재 한도병원에서 ○○○(여 28세, 간호사)은 의사의 마약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페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인질극 · 난동 사건

▶ 2001. 3. 5. 08:3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자택에서 ○○○(남 34세, 노동)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2001. 4. 10. 18: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남 30세, 무직)과 ○○○(남 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수사차량을 피의자들의

운전차량으로 들이받고 이어 ○○○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울산지검)

▶ 2001. 6. 20. 01:00경 군산시 소재 자택에서 ○○○(남 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동인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 (군산지청)

▶ 2001. 9. 21.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대명장여관에서 ○○○(남 40세, 무직)이 필로폰을 과다 투약한 환각상태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 (서울남부지청)

▶ 2002. 1. 16. 04:50경 대전 중구 소재 여관에서 ○○○(남 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뒤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 20여명과 2시간여 대치하며 난동 (대전지검)

▶ 2002. 1. 23. 19: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자수한 피의자 ○○○(남 29세, 무직)이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 도중, 형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인천지검)

▶ 2002. 3. 29. 07:10경 피의자 ○○(남 29세, 운전기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남 51세)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도록 하다가 검사를 만나야겠다며 대구지검으로 갈 것을 요구, 같은 날 08:30경 대구지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 (대구지검)

▶ 2002. 1. 5. 13:20경 필로폰 중독자 ○○○(남 36세,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백화점 1층 화장품 직원 ○○○를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 (서울서부지청)

▶ 2006. 11. 15. 11:55경 대구시 동구 신기동 소재 ○○아파트에서 ○○○(남, 50세)가 대구지검에 전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수를 표명하고, 그 후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배를 자해하고,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할머니를 위협하고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2012. 10. 26. 22: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중독자 ○○○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 (부산지검)

▶ 2013. 2. 26. 02:00경 필로폰 중독자 ○○○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와 볼펜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수회 찌르고 당직실 컴퓨터를 손괴하면서 난동 (대구지검)

▶ 2013. 7. 12.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절도사건 피의자가, 평소 과용해오던 향정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환각상태로 검사실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 (서울북부지검)

▶ 2013. 9. 10. 14:00경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후 주차장 주차된 트럭 안에서 식칼로 동거녀의 목을 겨눠 협박하고 난동 (광주지검)

수사관 보복 살해 · 상해 사건

▶ 1997. 9. 22. 10:40경 필로폰 밀매자 ○○○(남 37세, 무직)가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 (인천지검)

▶ 1998. 1.경 대마 밀매자 ○○○(남 43세, 무직)이 동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1998. 4. 13. 17:00경 필로폰 밀매자 ○○○(남 40세, 무직)가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1998. 10. 15. 01:30경 필로폰 밀매자 ○○○(남 35세, 무직)외 2명이 동인들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의 중상을 가함 (의정부지청)

▶ 1999. 1. 20.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 ○○○(남 30세, 무직), ○○○(남 30세, 무직), ○○○(남 29세, 무직) 등이 동인들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을 가함 (진주지청)

▶ 2004.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조직원 ○○○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에게 생선회 칼을 휘둘러 무릎에 3주 상해를 가함 (서울지검)

▶ 2006. 8. 29. 05:00경 필로폰 밀매자 ○○○(남 36세, 무직)가 동인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등산용 칼로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 (성남지청)

기타(특수강간 등) 사건

▶ 2003. 1. 28. 필로폰 밀매자 ○○○(남 42세, 사채업)가 ○○○과 필로폰을 0.05g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여 37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과 성교토록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와 투약 및 성교토록 함

▶ 2004. 11.경 대구 S자동차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46세), ○○○는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고도의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시내버스 운전수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경우 환각으로 대형 참사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사건 적발을 계기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종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 제고)

▶ 2004. 7. 31. ○○○(남 37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의 후사경을 부수고 위 차량 후드 위로 올라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을 차량 경보음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온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위 봉고차량 안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동인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하였음

▶ 2005. 6. 통영시 광도면 소재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 중 동인이 피의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 2006. 7. 24. 피의자 ○○○(남 25세)는 진주시 소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였던 피해자 ○○○을 승용차에 태우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다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꼭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음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피의자의 구타로 상해를 입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는 등 협박함

▶ 2006. 9. 7.경 피의자 ○○○(남 41세)은 피의자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동거녀인 피해자 ○○○(27세)에게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이 있는데 네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네가 아니냐,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하였으나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대답을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자상 등을 가하고, 2007. 6. 2.경 여수시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전처인 피해자 ○○○(34세)과 함께 여수경찰서에서 오동도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뒤편으로 불상의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누군가와 짜고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약 1시간 동안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귀, 이마, 양쪽 무릎, 손목, 발목 등 전신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쓰러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침 (순천지청)

▶ 2008. 3. 30.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장흥유원지 앞 도로에서 피의자 ○○○(남 38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여 20세)을 위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커터 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고 강제 추행함 (의정부지검)

▶ 2009. 10. 23. 23:00부터 10. 25. 08:00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모텔에서 애인 사이인 피의자 ○○○(남 37세)과 ○○○(여 30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는 과도로 ○○○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위 ○○○가 이를 피해 알몸 상태로 모텔 복도를 도망다니다가 종업원을 도움으로 이불로 몸을 가린 채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함 (서울중앙지검)

▶ 2013. 6. 23. 22:40경 오산시 궐동 건물 계단에서 피의자 ○○○(45세)가 피해자 ○○○(51세, 오산시내파)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 가 다른 건물로 뛰어 넘어가려다가 건물 사이에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검)

▶ 2013. 2.경 경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2명 구속 (부산지검)

▶ 2013. 6.경부터 8.경까지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한 조직폭력배 포함 5명 인지, 구속 (서울서부지검)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1. 개 황

가. 자수기간

▶ 2013. 4. 1.~ 2013. 6. 30.(3개월)

나.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12](마약류중독자[13] 포함)

다.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12]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 중증 투약자

13]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 ·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

라. 처 리

▶ 단순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주변 환경 및 의사의 소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 청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2. 자수실적

가. 마약류별 자수실적

▶ 전체 자수자 가운데 향정사범이 57명으로 전체의 90.5% 차지

표 3-79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마약류	합계			기소유예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건수	인원	구성비			
합계	63	63	100	12.7	20.6	39.7
마약	0	0	0.0	0	0	0
향정	57	57	90.5	8	13	25
대마	6	6	9.5	0	0	6

그림 3-42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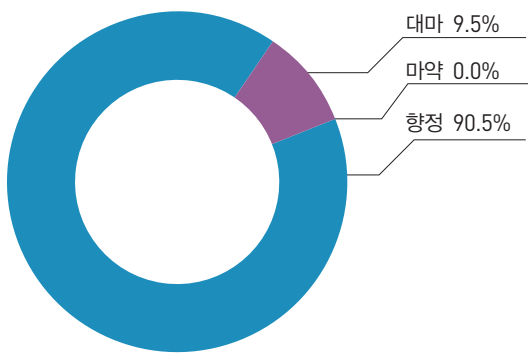

▶ 2013년도 자수실적은 63명으로 전년도 88명 대비 28.4% 감소

표 3-80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마약류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39 (100)	97 (100)	75 (100)	88 (100)	63 (100)
마약	0 (0.0)	0 (0.0)	0 (0.0)	0 (0.0)	0 (0.0)
향정	135 (97.1)	78 (80.4)	69 (92.0)	86 (97.7)	57 (90.5)
대마	4 (2.9)	19 (19.6)	6 (8.0)	2 (2.3)	6 (9.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43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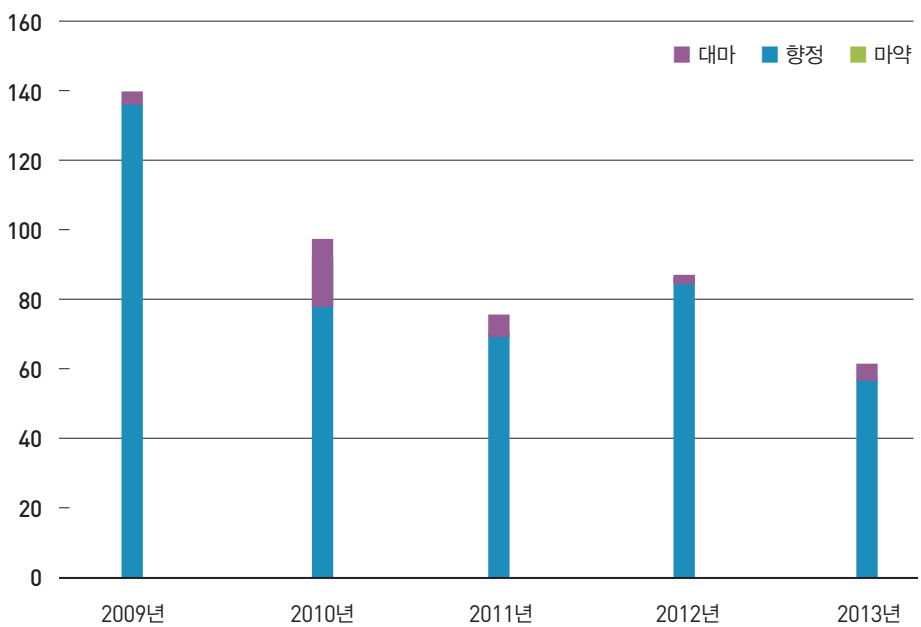

나. 자수자 처리현황

표 3-81 자수자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합계	처리현황									
		불입건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이송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타관 이송	미제
2009	139 (100)	3 (2.2)	39 (33.8)	6 (4.3)	40 (28.8)	0 (0.0)	0 (0.0)	2 (2.2)	0 (0.0)	6 (4.3)	34 (24.5)
2010	97 (100)	0 (0.0)	30 (31.0)	5 (5.2)	24 (24.7)	0 (0.0)	0 (0.0)	2 (2.1)	0 (0.0)	9 (9.3)	27 (27.8)
2011	75 (100)	0 (0.0)	22 (29.3)	3 (4.0)	14 (18.6)	2 (2.7)	0 (0.0)	1 (1.3)	0 (0.0)	2 (2.7)	31 (41.3)
2012	88 (100)	0 (0.0)	39 (44.3)	1 (1.1)	14 (15.8)	0 (0.0)	0 (0.0)	1 (1.1)	1 (1.1)	2 (2.3)	30 (34.3)
2013	63 (100)	2 (3.2)	42 (66.6)	0 (0.0)	8 (12.7)	0 (0.0)	0 (0.0)	1 (1.6)	0 (0.0)	10 (15.9)	0 (0.0)

* 기준일 : 2009년~2012년 특별자수기간 종료 직후, 2013년은 자수자 처리 이후

▶ 2013년도 자수자 63명 중 구공판 42명(66.6%)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수자가 관용처리 되었음

▶ 구공판 처리된 자수자 42명은 상습중독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자, 누범기간 중 재범자 등 죄질이 중한 자들이 대부분임

그림 3-44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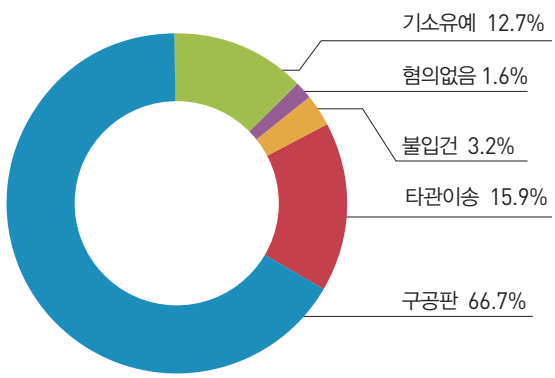

▶ 2013년도 향정사범 자수자 63명 중 4명은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자수자의 41.2%인 26명이 검찰, 58.8%인 37명이 경찰에 각 자수

표 3-82 자수실적 기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검찰		경찰		합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자수자	26	41.2	37	58.8	63

다. 연령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40대 45명(51.1%), 30대 28명(31.9%) 순임

표 3-83 자수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합계
사범수(%)	0(0.0)	3(4.8)	15(23.8)	27(42.8)	18(28.6)	0(0.0)	63(100)

그림 3-45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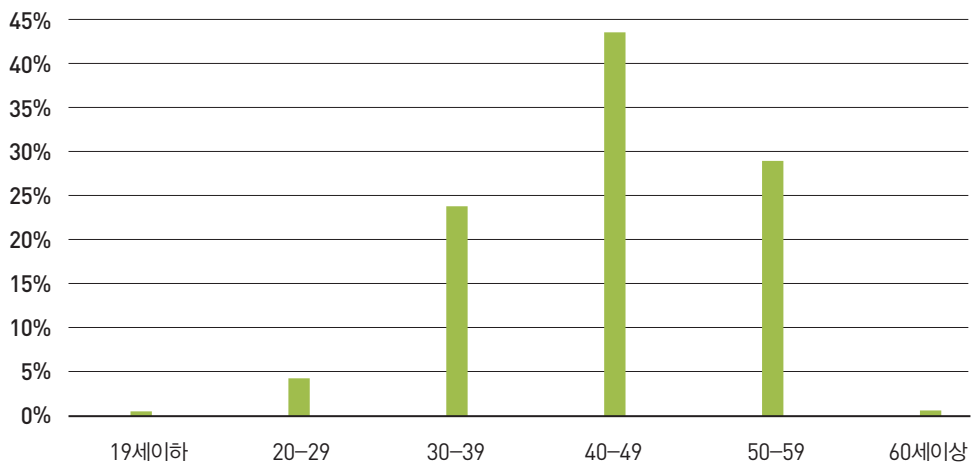

라. 성별 현황

▶ 전체 자수자의 성별현황은 남성 71명(80.7%), 여성 17명(19.3%)으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

표 3-84 자수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범수 (%)	0 (0.0)	0 (0.0)	50 (87.7)	7 (12.3)	5 (83.3)	1 (16.7)	55 (87.3)	8 (12.7)

그림 3-46 자수자 성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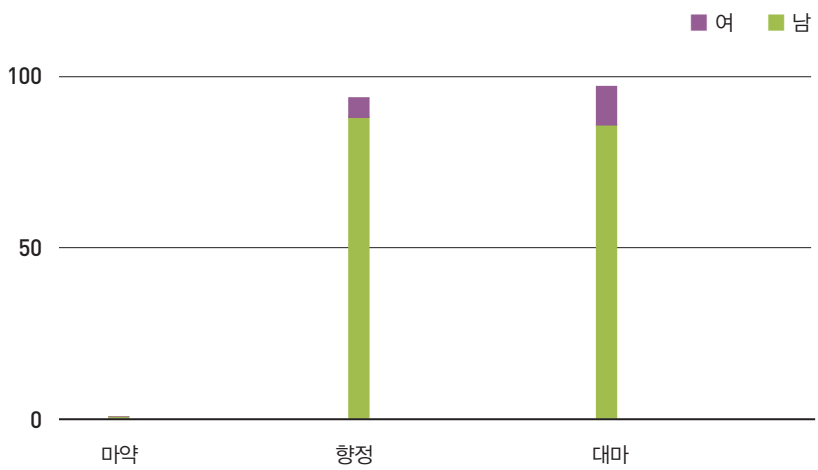

마.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 30명(47.6%), 자영업 15명(23.8%), 회사원 8명(12.7%), 유흥업 3명(4.7%), 노동 5명(5.7%) 순임

표 3-85 자수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무직	자영업	회사원	유흥업	노동	종업원	대학생	주부	기타	합계
사범수 (%)	30 (47.6)	15 (23.8)	8 (12.7)	3 (4.7)	2 (3.2)	1 (1.5)	1 (1.5)	1 (1.5)	2 (3.2)	63 (100)

그림 3-47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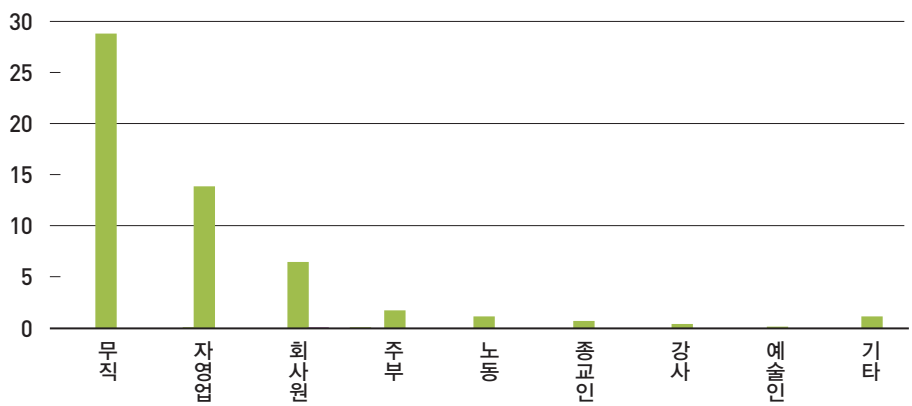

3. 분석 및 향후 계획

가. 자수자 감소에 따른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활성화

▶ 현행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 상 선처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자수자에 대하여 치료재활의 기회부여가 어려운 상황 증가

- 올해 자수자 63명 중 기소유예 처분자는 총 6명(교육이수조건부 4명, 일반 2명)으로 전체 자수자의 9.5%에 불과

▶ 현행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지침을 대폭 수정 · 완화하여 자수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가능토록 조치

나. 마약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치료 · 재활 정책 지속적 추진

▶ 지속적인 마약 폐해 홍보 정책 추진을 통해 예방 효과 극대화

▶ 치료재활 효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제고 및 홍보

- 조사결과, 최근 10년간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평균 재범률은 17.3%로 일반 마약사범의 평균재범률 36.8%와 비교하면 치료재활제도가 마약사범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 연중 적극적인 치료 · 재활 정책 추진 및 홍보

- 단순 투약자로 사안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재범 방지 및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위해 작년 재 개소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의 검사의뢰 입소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천(전문 강사진, 짜임새 있는 교육일정, 교육시설 완비 등으로 한 층 강화된 교육 효과 기대됨)

- 마약류 중독자를 집중 치료 · 관리할 수 있는 전국 21개 지정치료기관(국립부곡병원 등 총 321개 병상 및 예산 확보)에 적극 입원 의뢰

제5절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1. 개 황

가. 단속기간

▶ 양귀비 : 2013. 4. 중순 ~ 6. 하순(개화기)

▶ 대 마 : 2013. 6. 중순 ~ 7. 하순(수확기)

나. 단속방법

▶ 각 청 마약전담검사 지휘 하에 마약수사반 직원, 시 · 군 · 구 유관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양귀비 ·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귀비 · 대마 다량 사용자, 대마 재배 허가지 및 대마 도난신고 사실 등 사전 확인 후 단속

▶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청에서는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 수립 실시

다. 단속대상

▶ 양귀비 · 대마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2. 단속실적

가. 단속인원

▶ 907명 단속(전년대비 15.8% 감소)

• 양귀비사범(10.4% 감소), 대마사범(32.3% 감소)

▶ 단속현황

표 3-86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 사범별	계	구속	불구속	불입건
계	907(100)	21(2.3)	625(68.9)	261(28.8)
양귀비	727(100)	0(0.0)	474(65.2)	253(34.8)
대마	180(100)	21(11.7)	151(83.9)	8(4.4)

나. 단속실적 추이

표 3-87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단위 : 명)

연도별 / 사범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양귀비	2,268 (62.9%)	876 (-61.4%)	992 (13.2%)	811 (-18.2%)	727 (-10.4%)
대마	223 (74.2%)	168 (-24.7%)	217 (29.2%)	266 (22.6%)	108 (32.3%)
계	2,491 (63.9%)	1,044 (-58.1%)	1,209 (15.8%)	1,077 (-10.9%)	907 (-15.8%)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유형별 단속실적으로 양귀비 밀경작사범은 713명으로 전년(774명)대비 7.9% 감소하였고, 대마 밀경작사범은 40명으로 전년(73명)대비 45.2% 감소

▶ 밀경작 규모별로 양귀비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89명으로 전년(107명)대비 16.8% 감소하였고, 대마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7명으로 전년(32명)대비 78.1% 감소

그림 3-48 연도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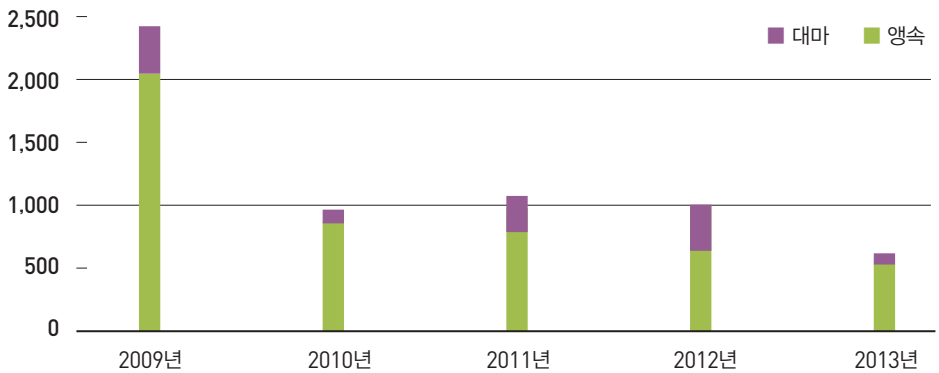

다. 압수물 현황

표 3-88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종류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양귀비(주)	146,933	90,758	97,517	65,623	58,596
대마(주)	39,724	12,657	72,109	10,022	2,321
대마초(g)	1,830	1,871	694	1,133	1,018
대마종자(g)	113,010	23	93,568	5,589	2,381

▶ 2013년도 양귀비(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10.7% 감소

▶ 2013년도 대마(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76.8% 감소, 대마초 압수량은 전년대비 10.1% 감소

3. 향후 대책

가. 효율적인 양귀비 · 대마재배 사범 단속 운영

▶ 양귀비 · 대마 밀경작 사범의 경우 대부분 50주 이하의 소규모에 지나지 않고, 특히 대부분은 고령층 주민들로 60세 이상이 82.4%를 차지하고, 가정상비약 및 관상용이나 가축의 질병치료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경작하고 있어 그 처벌 가치가 크지 않음

- 양귀비 · 대마 총 단속인원 907명 중 관용처리(불입건, 기소유예) 인원은 707명으로 77.9% 차지

▶ 아편 · 대마의 밀거래 및 사용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양귀비 · 대마의 재배 사범에 대하여는 그 단속기준 · 운영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검토 필요

나. 주민 자진신고 적극 유도

▶ 1301 신고전화 홍보 및 운영강화

▶ 대규모 밀경작사범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으로 주민 자진신고 유도

다.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전개

▶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귀비 · 대마 파종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전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계몽활동 강화하여 단속보다는 양귀비 · 대마 재배 불법성 홍보 정책 추진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마 절취 우려 및 도난 방지 대책 없는 도로변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의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재배 허가를 제한토록 유도하는 등 재배농가의 경각심 고취토록 조치

▶ 기소유예 및 불입건자들에 대한 계몽차원에서 양귀비 · 대마 재배의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철저한 사후관리

제6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범죄동향 및 분석[14]

1.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3. 1. 1. ~ 2013.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환각물질흡입사범 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2. 범죄유형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또는 동 물질이 함유된 접착제, 풍선류, 도료 및 부탄가스를 말함

3. 현황

가.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추세

표 3-89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구분 / 연도별	건수	인원(명)		
		합계(점유율)	구속	불구속
2009	744	1,081(100%)	345(31.9%)	736(68.1)
2010	839	1,366(100%)	280(20.5%)	1,086(79.5%)
2011	1,002	1,761(100%)	274(15.5%)	1,487(84.5%)
2012	919	1,518(100%)	239(15.7%)	1,279(84.3%)
2013	563	862(100%)	186(21.6%)	676(78.4%)

▶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환각물질 흡입사범이 2011년도 1,761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862명으로 전년대비 43.2% 감소하였음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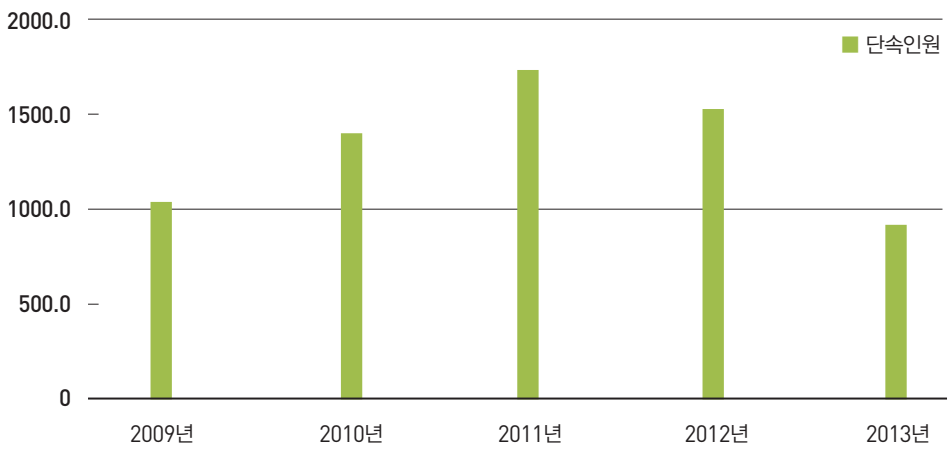

나. 월별 단속내역

표 3-90 2013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 월별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 월별	단속인원	구성비(%)
합계	862	100
1월	102	11.8
2월	66	7.7
3월	75	8.7
4월	80	9.3
5월	84	9.7
6월	80	9.3
7월	116	13.5
8월	64	7.4
9월	70	8.1
10월	32	3.7
11월	43	5.0
12월	50	5.8

▶ 2013년도 월별 단속 점유율은 1월(11.8%), 7월(13.5%)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사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월별 단속추이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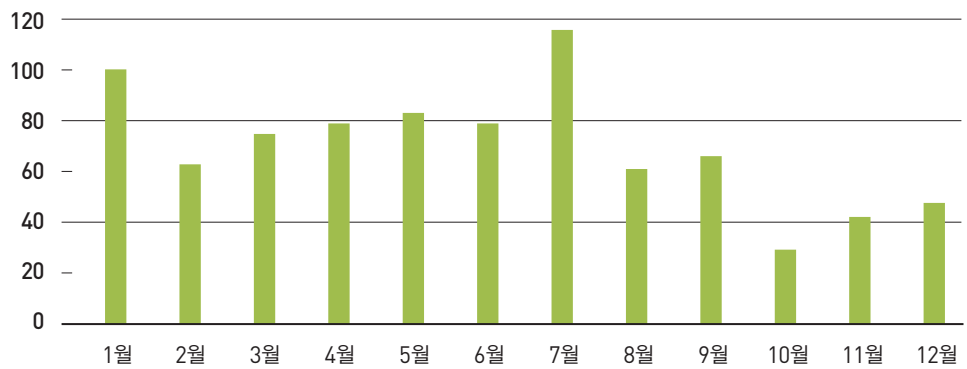

다. 기관별 현황

표 3-91 기관별 단속현황 (단위 : 명)

기관별 / 연도	검찰	경찰	기타	합계
2011	76 (4.3)	1,685 (95.7)	0 (0.0)	1,761 (100)
2012	104 (6.9)	1,414 (93.1)	0 (0.0)	1,518 (100)
2013	99 (11.5)	763 (88.5)	0 (0.0)	862 (100)

▶ 2013년도 기관별 단속점유율은 검찰 11.5%, 경찰 88.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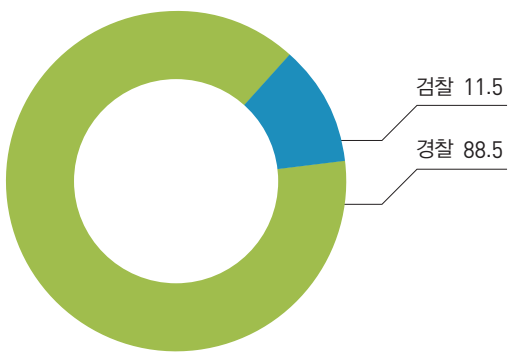

라. 지역별 현황

표 3-92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지역별 \ 연도별	2011	2012	2013
합계	1,761(100)	1,518(100)	862(100)
서울	520(29.5)	303(20.0)	170(19.7)
인천 · 경기	791(44.9)	709(46.7)	335(38.9)
부산	78(4.4)	87(5.7)	60(7.0)
울산 · 경남	142(8.1)	120(7.9)	64(7.4)
대구 · 경북	18(1.0)	18(1.2)	17(2.0)
대전 · 충남	25(1.4)	46(3.0)	66(7.7)
강원	21(1.2)	14(0.9)	10(1.2)
전북	29(1.6)	12(0.8)	6(0.7)
광주 · 전남	92(5.2)	180(11.9)	99(11.5)
충북	13(0.7)	6(0.4)	13(1.5)
제주	8(0.5)	5(0.3)	1(0.1)
외 국	0(0.0)	0(0.0)	0(0.0)
불상	24(1.4)	18(1.2)	21(2.4)

▶ 2013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58.6%), 광주 · 전남(11.5%), 울산 · 경남(7.4%), 부산(7.0%), 대전 · 충남(7.7%) 순으로 전체사범의 73%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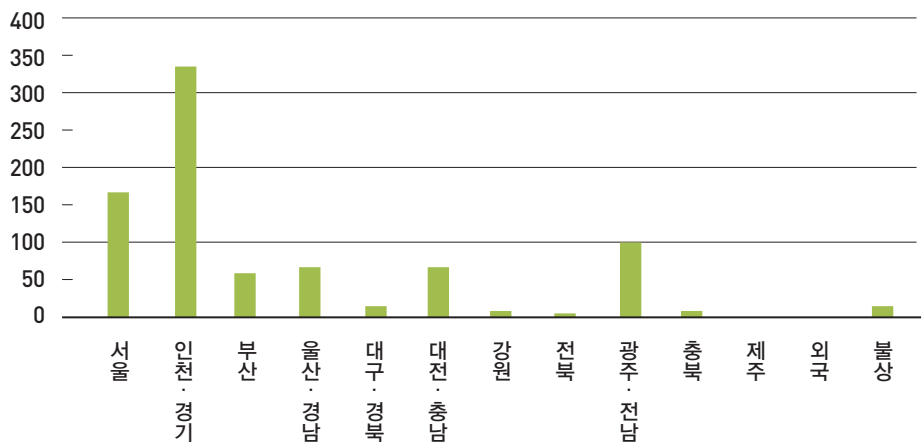

마. 직업별 현황

표 3-93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별 \ 연도별	2011	2012	2013
합계	1,761(100)	1518(100)	862(100)
농업	2(0.1)	2(0.1)	1(01)
도소매업	3(0.2)	2(0.1)	3(0.3)
유흥주점업	3(0.2)	0(0.0)	2(0.2)
제조업	0(0.0)	1(0.1)	00
건설업	0(0.0)	1(0.1)	2(0.2)
요식업	0(0.0)	2(0.1)	2(0.2)
노점	3(0.2)	2(0.1)	10
고물업	1(0.1)	0(0.0)	0(0.0)
기타사업	1(0.1)	0(0.0)	0(0.0)
점원	1(0.1)	0(0.0)	0(0.0)
행상	0(0.0)	2(0.1)	1(0.1)
운전자	11(0.6)	7(0.5)	3(0.3)
요식업종사자	7(0.4)	3(0.2)	0(0.0)
유흥업종사자	5(0.3)	5(0.3)	0(0.0)
일반회사원	4(0.2)	1(0.1)	12(1.4)
기술자	3(0.2)	2(0.1)	1(0.1)
기능공	1(0.1)	2(0.1)	5(0.6)
선원	0(0.0)	2(0.1)	0(0.0)
일용노동자	58(3.3)	63(4.2)	40(4.6)
기타종사자	3(0.2)	3(0.2)	6(0.7)
종교가	0(0.0)	1(0.1)	2(0.2)
예술인	0(0.0)	1(0.1)	0(0.0)
육군	1(0.1)	1(0.1)	0(0.0)
학생	837(47.5)	332(21.9)	160(18.6)
주부	4(0.2)	1(0.1)	2(0.2)
무직	710(40.3)	620(40.8)	300(34.8)
직업미상	8(0.5)	11(0.7)	15(1.7)
기타	95(4.4)	451(29.7)	305(35.4)

▶ 2013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4.8%), 학생(18.6%), 일용노동자(4.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비해 학생의 비율이 19.9% 감소하였음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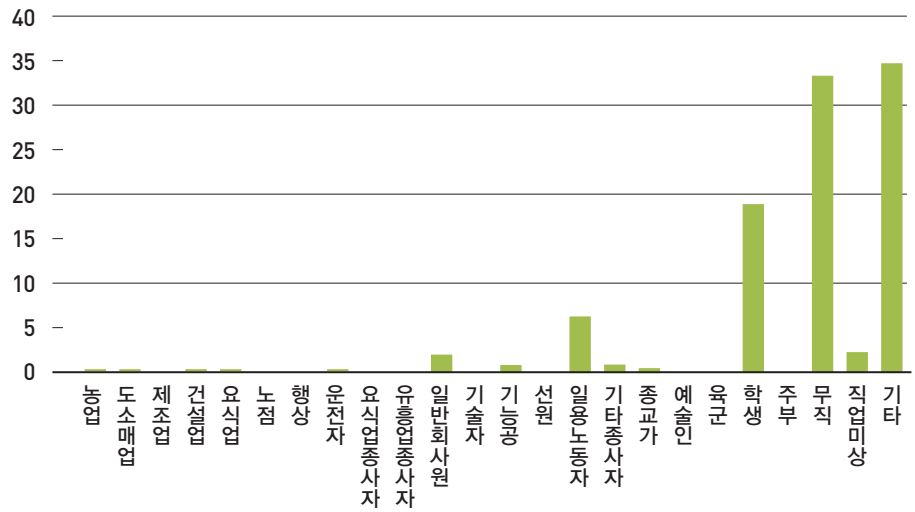

바. 연령별 현황

표 3-94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 연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9	101 (9.3)	442 (40.8)	205 (19.0)	268 (24.9)	54 (5.0)	3 (0.3)	8 (0.7)	1,081 (100.0)
2010	331 (24.2)	598 (43.7)	141 (10.3)	234 (17.1)	56 (4.1)	3 (0.2)	4 (0.3)	1,367 (100.0)
2011	374 (21.2)	939 (53.3)	85 (4.9)	270 (15.4)	65 (3.7)	13 (0.7)	15 (0.8)	1,761 (100.0)
2012	218 (14.4)	871 (57.4)	83 (5.5)	246 (16.2)	83 (5.5)	10 (0.6)	7 (0.5)	1,518 (100.0)
2013	94 (10.9)	420 (48.7)	62 (7.2)	179 (20.8)	83 (9.6)	12 (1.4)	12 (1.4)	862 (100.0)

▶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특성상 19세 이하 청소년(1,089명)이 전체 사범의 71.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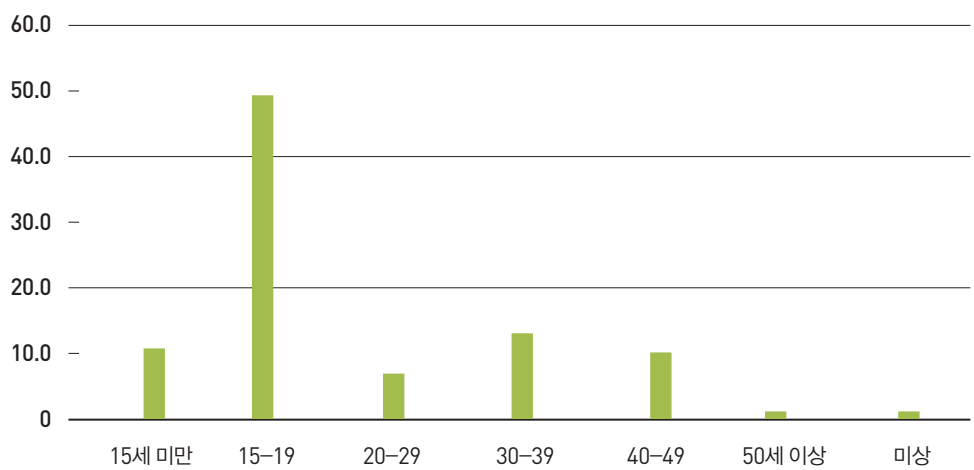

사. 성별 현황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 성별	남	여	합계
2009	915 (84.6)	166 (15.4)	1,081 (100)
2010	1,040 (76.1)	327 (23.9)	1,367 (100)
2011	1,260 (71.5)	501 (28.5)	1,761 (100)
2012	1,152 (75.9)	366 (24.1)	1,518 (100)
2013	686 (79.6)	176 (20.4)	862 (100)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79.6%, 여성이 20.4%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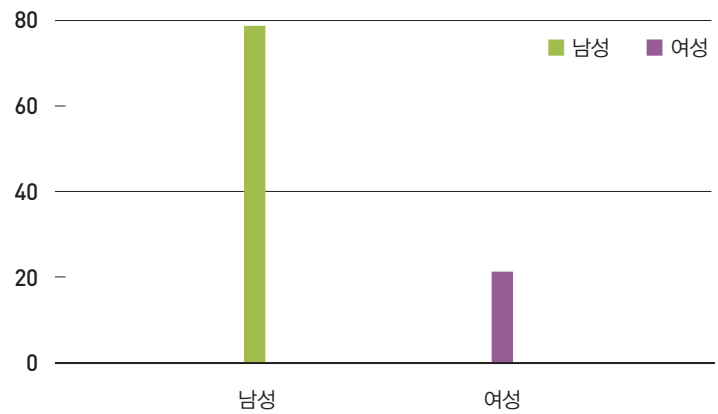

아. 검찰 처리 현황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내역 (단위 : 명)

연도 \ 검찰처분	처리내역									합계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타관	기타	미제	
2009	513 (45.2)	50 (4.4)	21 (1.9)	142 (12.5)	15 (1.3)	344 (30.3)	33 (2.9)	8 (0.7)	9 (0.8)	1,135 (100)
2010	410 (29.3)	54 (3.9)	24 (1.7)	262 (18.8)	10 (0.7)	602 (43.1)	32 (2.3)	1 (0.1)	2 (0.1)	1,397 (100)
2011	409 (23.2)	44 (2.5)	40 (2.3)	277 (15.7)	20 (1.1)	897 (50.8)	48 (2.7)	2 (0.1)	29 (1.6)	1,766 (100)
2012	466 (28.6)	63 (3.8)	29 (1.8)	228 (14.0)	30 (1.8)	740 (45.4)	50 (3.2)	7 (0.4)	15 (1.0)	1,628 (100)
2013	341 (36.1)	47 (5.0)	35 (3.7)	87 (9.2)	47 (5.0)	337 (35.6)	31 (3.3)	10 (1.1)	12 (1.3)	947 (100)

▶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특성상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점유율이 전체 처분인원의 35.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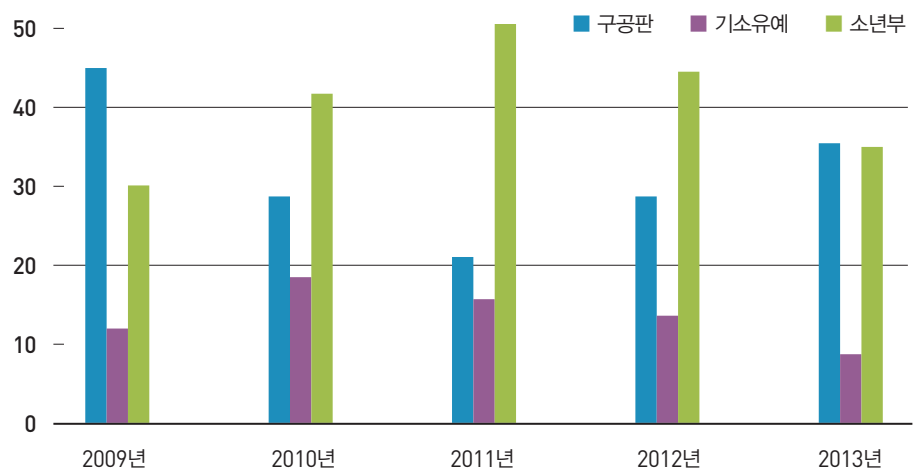

자. 1심 재판결과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 명)

구분 / 연도	벌금	집행유예	1 년 미만	3 년 미만	7 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9	24 (5.8)	88 (21.3)	173 (41.8)	109 (26.4)	0 (0.0)	0 (0.0)	0 (0.0)	0 (0.0)	19 (4.6)
2010	24 (6.6)	75 (20.7)	124 (34.2)	123 (33.9)	0 (0.0)	0 (0.0)	0 (0.0)	0 (0.0)	17 (4.7)
2011	29 (8.3)	55 (15.8)	85 (24.4)	132 (37.8)	13 (3.7)	0 (0.0)	0 (0.0)	0 (0.0)	35 (10.0)
2012	19 (5.9)	55 (17.2)	101 (31.6)	106 (33.1)	0 (0.0)	0 (0.0)	0 (0.0)	0 (0.0)	39 (12.2)
2013	27 (9.0)	49 (16.3)	87 (28.9)	102 (33.8)	0 (0.0)	0 (0.0)	0 (0.0)	0 (0.0)	37 (12.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2013년도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62.7%), 집행유예(16.3%), 벌금(9.0%) 순으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율에 비해 높은 것은, 환각물질 흡입사범 역시 마약류사범의 경우처럼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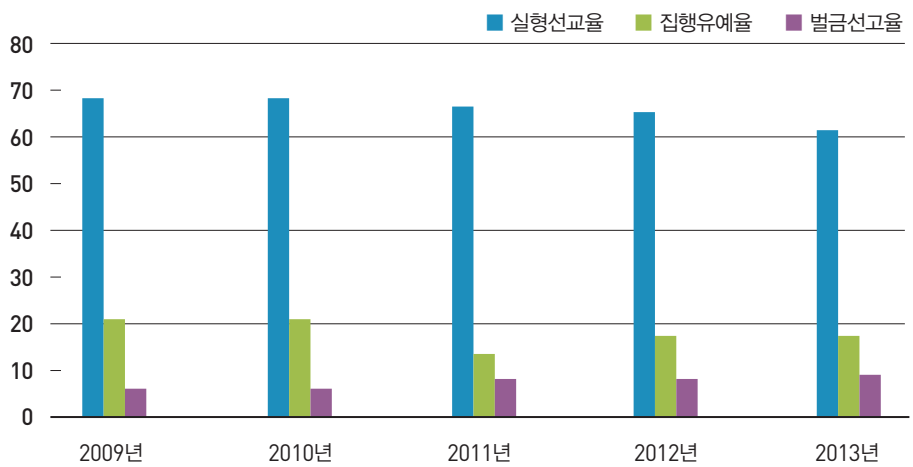

차.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선고별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09	387 (72.7)	105 (19.7)	0 (0.0)	40 (7.5)	532 (100)
2010	267 (66.8)	77 (19.3)	0 (0.0)	56 (14.0)	400 (100)
2011	244 (73.1)	52 (15.6)	0 (0.0)	38 (11.4)	334 (100)
2012	215 (63.4)	59 (17.4)	1 (0.3)	64 (18.9)	339 (100)
2013	186 (68.6)	40 (14.8)	0 (0.0)	45 (16.6)	27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58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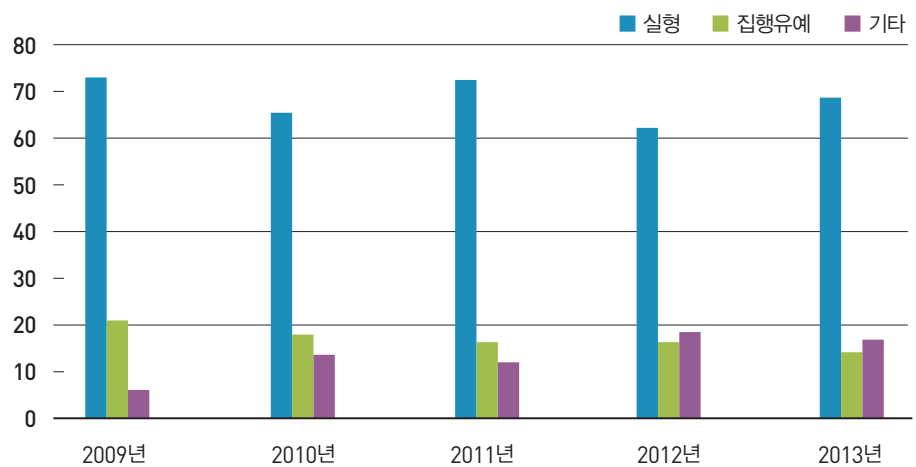

카.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99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 명)

금액별 / 연도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 원)
2009	0 (0.0)	1 (2.1)	2 (4.2)	9 (19.1)	35 (74.6)	2,219,149
2010	0 (0.0)	3 (5.7)	0 (0.0)	7 (13.4)	42 (80.9)	2,113,462
2011	0 (0.0)	0 (0.0)	2 (4.4)	9 (20.0)	34 (75.6)	1,886,667
2012	0 (0.0)	0 (0.0)	3 (4.8)	9 (14.5)	50 (80.7)	2,241,935
2013	0 (0.0)	0 (0.0)	2 (5.0)	10 (25.0)	28 (70.0)	2,025,0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59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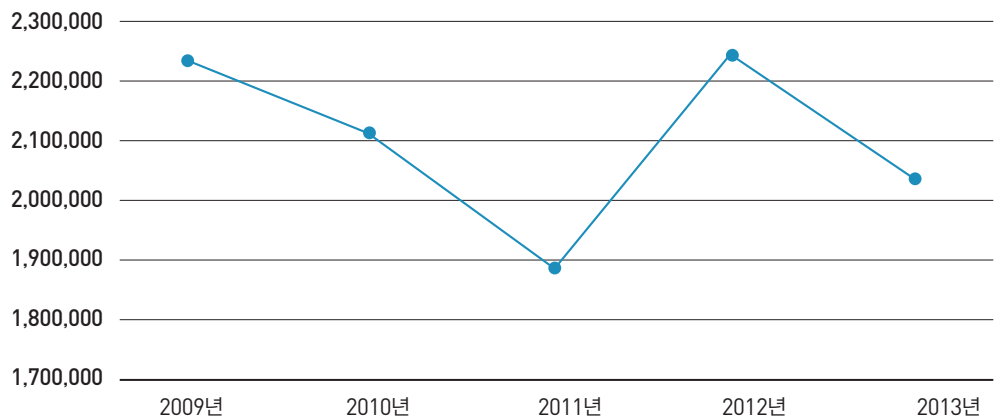

타. 실형자 · 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표 3-100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자 · 집행유예자 형기 평균 (단위 : 월)

구 분 / 연도별	실형자(형기)	집행유예자(유예형기)
2009	13.0	23.2
2010	13.9	23.7
2011	15.6	23.5
2012	14.5	24.0
2013	13.3	22.8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파.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101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09	11(10.5)	90(85.7)	4(3..8)	0(0.0)	105(100)
2010	5(6.5)	69(89.6)	3(3.9)	0(0.0)	77(100)
2011	2(3.8)	50(96.2)	0(0.0)	0(0.0)	52(100)
2012	13(22.0)	36(61.0)	9(15.3)	1(1.7)	59(100)
2013	7(17.5)	31(77.5)	2(5.0)	0(0.0)	40(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60 환각물질 흡입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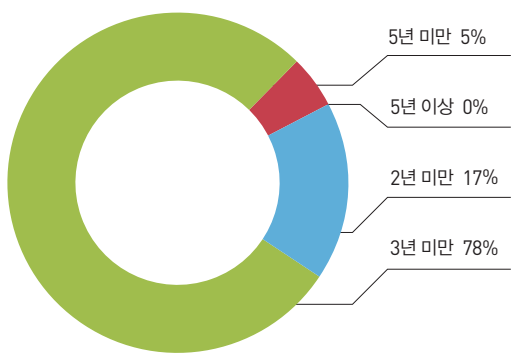

하.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102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실형기간별 구성비

(단위 : 명)

기간별 / 연도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계
2009	189 (48.8)	172 (44.4)	14 (3.7)	5 (1.3)	7 (1.8)	387 (100)
2010	118 (44.1)	127 (47.6)	12 (4.5)	8 (3.0)	2 (0.8)	267 (100)
2011	85 (34.8)	114 (46.7)	26 (10.7)	15 (6.2)	4 (1.6)	244 (100)
2012	97 (45.1)	104 (48.4)	6 (2.8)	3 (1.4)	5 (2.3)	215 (100)
2013	81 (43.5)	93 (50.0)	8 (4.3)	3 (1.6)	2 (1.1)	18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61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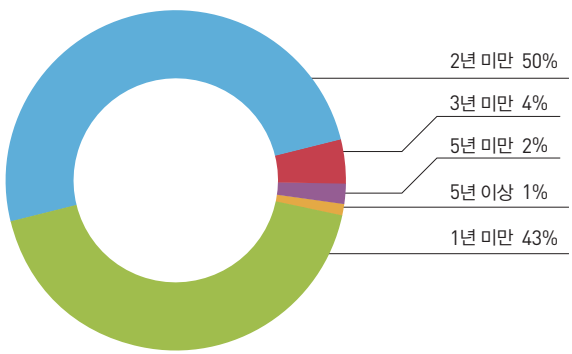

4. 분석결과

가. 2013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13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862명으로 전년도(1,518명) 대비 43.2% 감소하였음

나. 19세 이하 청소년이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다수를 차지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19세 이하 청소년(514명)이 59.6%를 차지

▶ 청소년층은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환각물질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다. 특정기간(1월, 7월) 환각물질 흡입사범 급증

▶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인 1월, 7월에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5. 향후 대책

가. 환각물질흡입 폐해의 심각성 인식 제고

▶ 교과부, 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 단속 강화

▶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소형 마트,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 필요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처벌 강화

다. 방학 대비 청소년 대상 홍보활동 강화

▶ 교과부, 경찰청과 연계하여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라. 치료재활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재범 방지

▶ 환각물질 흡입사범 또한 잠재적 마약류사범으로 분류, 적극적인 치료재활제도 적용

검찰
PROSECUTION SERVICE